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총 괄	1
가. 회계별 세입예산안 총괄	1
나. 회계별 세출예산안 총괄	2
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	3
1) 부서별 주요 증액사업	5
2) 2025년 예산 이관 내역	7
라. 세출예산안 경비별 현황	9
마. 회계간 재정구조	10
2. 일반회계	11
가. 세입예산안	11
나. 세출예산안	12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14
가. 세입예산안	14
나. 세출예산안	15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

II .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17
가. 일반회계	17

【생활안전교통국】

(1) 렌터카 및 리스 차량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17
(가) 개 요	17
(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방안 마련 필요	18

2. 세출예산안	23
가. 일반회계	23

【총 괄】

(1)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된 비목변경 필요	23
(2)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 통합 조치를 통한 운영 효율화 필요	26

【기획조정관】

(1) 인건비(7101-111, 7101-112, 7102-114, 7102-115, 7102-116, 7102-117, 4302-111)	31
(가) 개 요	31
(나) 행정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 적극 채용방안 마련 필요	33
(다) 수사 전문성 강화 및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방안 논의 필요	36

【미래치안정책국】

(1) 경찰청 R&D	46
(가) 개 요	46
(나) 경찰청 R&D 사업체계 정비 필요	49
(다) 국제협력형 연구과제의 내실 있는 사전 준비 필요	53
(2) 장비관리유지(4231-314)	58
(가) 개 요	58
(나) 전자충격기 교체사업 시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한 계획 마련 필요	59
(3) 경찰기동력강화(4231-311)	61
(가) 개 요	61
(나) 순찰차용 중형승용차 공급 제조사 다양화 등 순찰차 품질 향상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62

【범죄예방대응국】

(1)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1132-311)	66
(가) 개 요	66
(나) 사적구매 바디캠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67

【생활안전교통국】

(1) 도로교통공단출연(출연금)(1331-314)	72
(가) 개 요	72
(나)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확대를 위한 발급 절차 개선 필요	74

(2) 사회적약자보호활동(1431-311)	78
(가) 개 요	78
(나) 범죄피해평가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79
(다) 사회적약자보호 종합 플랫폼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84

【수사기획조정관】

(1) 수사지원(1231-311)	89
(가) 개 요	89
(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90
(다) 사건기록등본용 고속복사기 임차사업 예산조정 검토 필요	96
(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검토 필요	98
(마)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개최 활성화 방안 검토	101
(바) 피상범죄 국민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관서 수사부서 발신 정보 알리미 서비스 도입 필요	104

【형사국】

(1)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1231-313)	106
(가) 개 요	106
(나) 임차 차량용 유류비 통합 편성 필요	107

【감사관】

(1) 감사·감찰·인권활동(7133-311)	111
(가) 개 요	111
(나) 민원조정위원회의 관서별 민원 특성·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필요	112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

(1) 중앙학교인건비(7102-116)	116
(가) 개 요	116
(나) 중앙학교 교수요원 정원 확보 방안 등 검토 필요	117

I.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총괄

-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개의 프로그램, 4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 회계별 세입예산안 총괄

<2025년도 회계별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예산		2025예산안(B)	증감(B-A)	
	본예산	추경(A)			%
일반회계	1,279,380	1,279,380	1,465,264	185,884	14.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경찰병원)	91,346	91,346	91,539	193	0.2
합계	1,370,726	1,370,726	1,556,803	186,077	13.6

※자료: 경찰청, 총계기준

-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568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1조 3,707억 2,600만원(추경기준)보다 1,860억 7,700만원(13.6%)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858억 8,400만원(14.5%)이 증액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1억 9,300만원(0.2%)이 증액되었음.

나. 회계별 세출예산안 총괄

□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계 기준
총 규모는 13조 5,929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13조 455억 원 9,900만원
(추경기준)의 4.2%인 5,473억 9,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총지출 기준 총 규모는 13조 5,363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12조
9,907억 400만원(추경기준)의 4.2%인 5,456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5년도 회계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2025예산안 (B)	증 감 (B-A)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총계)	13,045,599	13,045,599	13,592,993	547,394	4.2
합 계(총지출)	12,990,704	12,990,704	13,536,376	545,672	4.2
일반회계	12,949,393	12,949,393	13,496,448	547,055	4.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경찰병원)	91,346	91,346	91,539	193	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860	4,860	5,006	146	3.0

※총지출 = 총계 - (회계간거래 + 회계기금간거래 + 계정간거래)

※자료: 경찰청

□ 총계 기준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5,470억 5,500만원(4.2%)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책특회계”라 함)가
1억 9,300만원(0.2%) 증액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라 함)는 1억 4,600만원(3.0%) 증액되었음.

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

<경찰청 소관 주요 증액 및 감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예산		2025예산안 (B)	증감(B-A)	
		본예산	추경(A)			%
일반 회계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	1,092	1,092	4,095	3,003	275.0
	사회적약자보호활동	5,322	5,322	16,491	11,169	209.9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	500	500	1,500	1,000	200.0
	사이버수사지원기술개발(R&D)	1,897	1,897	5,304	3,407	179.6
	과학기술 기반 군중밀집 관리 기술 개발(R&D)	1,092	1,092	1,976	884	81.0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기술 개발(R&D)	1,872	1,872	3,120	1,248	66.7
	형사사법업무전산화(정보화)	7,181	7,181	11,550	4,369	60.8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R&D)	934	934	1,373	439	47.0
	경찰장비 개선(R&D)	2,359	2,359	3,380	1,021	43.3
	경찰건강 스마트관리(R&D)	4,636	4,636	6,490	1,854	40.0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 개발(R&D)	1,067	1,067	-	△1,067	순감
	국민위해인자에대응한기체 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R&D)	170	170	-	△170	순감
	헬기운용 및 현대화	59,386	59,386	41,424	△17,962	△30.2
	청사시설관리	97,580	97,580	81,079	△16,501	△16.9

※자료: 경찰청

- 2025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275.0%), 사회적약자보호활동(209.9%),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200.0%)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음.

□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는 경찰 전문관리 시스템 고도화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사회적약자보호활동은 조직개편에 따라 피해자보호 업무 예산이 이관되었고, 사회적약자 종합플랫폼 등 사업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R&D)은 현장기술 개발 예산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헬기운용및현대화(△30.2%), 청사시설관리(△16.9%) 및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 개발(R&D)(순감), 국민위해인자에대응한 기체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R&D)(순감) 사업이 있음.

1) 부서별 주요 증액사업

□ 경찰청 부서별 주요 증액 사업은 경무인사지원 등이 있으며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음.

<부서별 주요 증액사업(세부사업 이하)>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코드)	사업내용	'25예산안
① 기획조정관			
1	치안활동지원 (7131-311)	임시청사 임차 및 조성	34,652
2	치안지원인력운영 (7131-314)	방호·미화·견위생 등 공무원 운영	180,656
② 경무인사기획관			
1	경무인사지원 (7131-313)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	1,450
2	경찰복지증진 (7135-311)	직장 보육시설 운영지원	54,713
3	경찰관서직장보육시설 운영(민자) (7135-751)	직장 보육시설 정부지급금	19,788
4	경찰관채용교육 (4135-311)	사격훈련 구급차 지원	2,386
③ 미래치안정책국			
1	경찰기동력강화 (4231-311)	노후 순찰차 교체	56,722
2	피복관리 (4231-313)	경찰관 피복비	50,314
3	장비유지관리 (4231-314)	총기보조장치	5,610
4	경찰유무선망개선 (4233-311)	수배차량검색시스템 운영	2,211
5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4234-511)	민원24홈페이지 구축	8,465
④ 범죄예방대응국			
1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1131-311)	기동순찰대 운영	5,595
2	범죄대응및치안상황관리 (1132-311)	중심지역관서 운영	1,840
⑤ 생활안전교통국			
1	교통안전활동 (1331-312)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900
2	사회적약자보호활동 (1431-311)	사회적약자 종합플랫폼	3,977

연번	세부사업 (사업코드)	사업내용	'25예산안
⑥ 경비국			
1	경비경찰활동 (2131-311)	APEC정상회의 안전관리	20,798
2	기동대운영및관리 (2131-314)	기동대 위생차 확충	1,980
3	대테러위기상황관리 (2132-311)	대테러 훈련시뮬레이터	1,313
⑦ 치안정보국			
1	정보업무전산화 (2231-511)	견문관리시스템 고도화	3,119
⑧ 수사기획조정관			
1	형사사법업무전산화 (1232-512)	차세대 키스 장비운영	6,168
⑨ 수사국			
1	사이버수사역량강화 (1231-315)	사이버·포렌식 수사 지원활동	11,563
⑩ 형사국			
1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 (1231-313)	마약조직범죄수사 활동 지원	8,364
2	과학수사역량강화 (1231-314)	DNA 감정 역량강화	20,081
3	과학수사시스템구축 (1232-511)	지문및전과기록 관리시스템 재구축	7,664
⑪ 안보수사국			
1	안보수사역량강화 (1231-316)	산업기술유출 수사 및 예방역량 강화	564
⑫ 감사관			
1	감사감찰인권활동 (7133-311)	민원조정위원회	125
⑬ 국제협력관			
1	해외치안협력강화 (3133-311)	국제경찰청장회의	598
2	국제치안활동강화(COA) (3133-312)	디지털포렌식랩 및 마약수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몽골 경찰 마약수사 역량강화	1,444
⑭ 경찰대학			
1	경찰대학운영 (41311-311)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3,419
⑮ 경찰병원			
1	진료업무운영관리 (4331-311)	의료장비 임차 등 진료업무 운영	4,036
2	장례식장운영 (4332-311)	장례용품 구입 등 장례식장 운영비	2,777

※ 자료: 경찰청

2) 2025년 예산 이관 내역

□ 경찰청은 2023년 11월 현장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 내 업무가 조정되면서 큰 규모로 예산이 이관되었음.

<2025년 경찰청 예산안 사업 이관 예산 목록>

(단위: 백만원)

2024년		→	2025년		사유
세부사업	예산액	→	세부사업	예산액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1131-311)	60	→	112시스템운영 (정보화) (1132-511)	60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이관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1131-311)	221	→	경찰정보화기반 고도화 (정보화) (4234-511)	451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이관
경비경찰활동 (2131-311)	20	→			
교통행정전산화 (정보화) (1332-511)	101	→			
신임순경교육 (4133-311)	89	→			
경무인사지원 (7131-313)	20	→			
수사지원 (1231-311)	5,447	→	과학수사역량강화 (1231-314)	5,447	조직개편에 따른 수사기법 예산 등 이관
지능·경제범죄수사 역량강화 (1231-312)	2,766	→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 (1231-313)	2,766	조직개편에 따른 전화금융사기 수사 예산 이관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 (1231-313)	5,984	→	사회적약자보호활동 (1431-311)	1,720	조직개편에 따른 신상정보 대상자 관리 예산 이관
		→	수사지원 (1231-311)	4,264	조직개편에 따른 특근매식비 등 이관
수사인권보호활동 (1231-317)	4,428	→	사회적약자보호활동 (1431-311)	4,428	조직개편에 따른 피해자 보호활동 예산 이관

외사경찰활동 (3132-311)	1,492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1131-311)	386	조직개편에 따른 외국인 범죄예방 예산 등 이관
		→	사회적약자보호활동 (1431-311)	249	조직개편에 따른 외국인 도움센터 예산 등 이관
		→	교통안전활동 (1331-312)	228	조직개편에 따른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예산 등 이관
		→	공공안녕정보활동 (2231-311)	193	조직개편에 따른 외사정보 예산 등 이관
		→	수사지원 (1231-311)	150	조직개편에 따른 통역 예산 등 이관
		→	안보수사역량강화 (1231-316)	265	조직개편에 따른 외사보안 예산 등 이관
		→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 (1231-313)	21	조직개편에 따른 외사요원 여비 등 이관
해외치안협력강화 (3132-312)	28	→	안보수사역량강화 (1231-316)	28	조직개편에 따른 외사보안 예산 등 이관

※자료: 경찰청

라. 세출예산안 경비별 현황

- 2025년도 경찰청 예산 총지출 13조 5,364억원 중 인건비가 10조 5,082억원으로 77.6%, 기본경비가 4,215억원으로 3.1%, 주요사업비가 2조 6,067억원으로 19.3%를 점유하고 있는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의 비중이 80.7%를 차지하고 있음.

<2025년도 경찰청 세출예산안 경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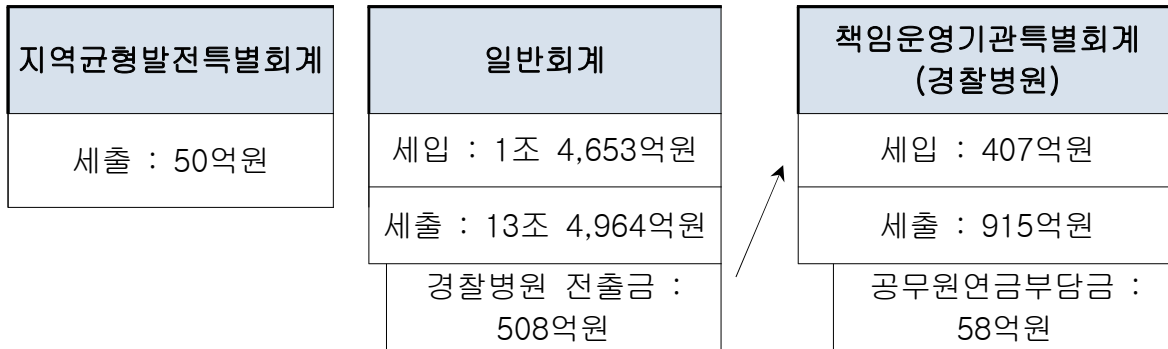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예산		2025예산안 (B)	증감 (B-A)	%	점유율
	본예산	추경(A)				
합 계(총지출)	12,990,704	12,990,704	13,536,376	545,672	4.2	100.0
인 건 비	10,035,569	10,035,569	10,508,150	472,581	4.7	77.6
기본경비	397,808	397,808	421,506	23,698	6.0	3.1
주요사업비	2,557,327	2,557,327	2,606,720	49,393	1.9	19.3

※자료: 경찰청

마. 회계간 재정구조

<경찰청 예산안 재정흐름도>



※총계계 기준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의 재정은 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경찰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3조 4,964억원이며, 이 중 경찰병원 전출금 508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915억원이며, 이 중 공무원연금부담금 58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조 4,652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추경기준) 1조 2,793억 8,000만원 대비 14.5%인 1,858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2025예산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1,279,380	1,279,380	1,465,264	185,884	14.5
재 산 수 입	3,237	3,237	3,449	212	6.5
경상이전수입	1,266,839	1,266,839	1,452,238	185,399	14.6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713	4,713	5,555	842	17.9
관유물매각대	4,591	4,591	4,022	△569	△12.4

※자료: 경찰청

-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이전수입¹⁾이 1,853억 9,9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이전수입 대부분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 증가(+1,901억 8,200만원)에 기인한 것임.

1) 경상이전수입은 벌금및과료, 과태료, 징계부과금,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

나. 세출예산안

-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지출 기준 13조 4,456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추경기준) 12조 8,997억 9,600만원 대비 4.2%인 5,458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B-A)	%
	본예산	추경(A)			
합 계(총 계)	12,949,393	12,949,393	13,496,448	547,055	4.2
합 계(총지출)	12,899,796	12,899,796	13,445,623	545,827	4.2
범죄예방및치안상황대응강화	59,625	59,625	63,524	3,899	6.5
범죄수사활동	401,095	401,095	390,951	△10,144	△2.5
교통안전·소통확보	313,486	313,486	305,207	△8,279	△2.6
사회적약자보호	5,322	5,322	16,491	11,169	209.9
사회질서유지	172,381	172,381	196,142	23,761	13.8
공공안전위험예방및대응강화	34,621	34,621	37,910	3,289	9.5
국제치안협력공조강화	15,365	15,365	15,126	△239	△1.6
전문경찰양성	68,630	68,630	71,962	3,332	4.9
치안인프라구축	494,099	494,099	489,579	△4,520	△0.9
과학치안활성화	56,691	56,691	64,027	7,336	12.9
경찰행정지원	11,278,481	11,278,481	11,794,704	516,223	4.6
회계간거래	49,597	49,597	50,825	1,228	2.5

※총지출 = 총계 - 회계간거래(전출금)

※자료: 경찰청

- 프로그램별 증감내역을 보면, 범죄예방및치안상황대응강화 38억

9,900만원(6.5%), 사회적약자보호 111억 6,900만원(209.9%), 사회
질서유지 237억 6,100만원(13.8%), 공공안녕위험예방및대응강화
32억 8,900만원(9.5%), 전문경찰양성 33억 3,200만원(4.9%), 과학
치안활성화 73억 3,600만원(12.9%), 경찰행정지원 5,162억원 2,300
만원(4.6%)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범죄수사활동 101억 4,400만원
(△2.5%), 교통안전·소통확보 82억 7,900만원(△2.6%), 국제치안협
력공조강화 2억 3,900만원(△1.6%), 치안인프라구축 45억 2,000만원
(△0.9%)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가. 세입예산안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인 경찰병원의 2025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915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추경기준) 913억 4,600만원 대비 0.2%인 1억 9,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2025예산안(B)	증감(B-A)	%
	본예산	추경(A)			
총 계	91,346	91,346	91,539	193	0.2
손 익 계 정	86,990	86,990	88,441	1,451	1.7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31,700	31,700	32,207	507	1.6
재산수입	49	49	49	0	-
경상이전수입	46	46	46	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340	6,340	6,403	63	1.0
관유물매각대	25	25	25	0	-
세계잉여금	3,184	3,184	1,492	△1,692	△53.1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5,646	45,646	48,219	2,573	5.6
자 본 계 정	4,356	4,356	3,098	△1,258	△28.9
세계잉여금	403	403	490	87	21.6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953	3,953	2,608	△1,345	△34.0

※자료: 경찰청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손익계정에서는 정부내부수입및기타가 25억 7,300만원(5.6%) 증액되었고, 세계잉여금이 16억 9,200만원(△53.1%) 감액되었음.
- 자본계정에서는 세계잉여금이 8,700만원(21.6%) 증액되었고 정부 내부수입및기타가 13억 4,500만원(△34.0%) 감액되었음.

나. 세출예산안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인 경찰병원의 2025년도 총지출 기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915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추경기준) 913억 4,600만원 대비 0.2%인 1억 9,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2025예산안(B)	증감(B-A)	%
	본예산	추경(A)			
합 계(총 계)	91,346	91,346	91,539	193	0.2
합 계(총지출)	86,048	86,048	85,747	△301	△0.3
손 익 계 정	86,990	86,990	88,441	1,451	1.7
인건비	50,141	50,141	50,207	66	0.1
기본경비	2,901	2,901	3,087	186	6.4
진료업무지원	24,707	24,707	25,372	665	2.7
장례식장운영	3,943	3,943	3,983	40	1.0
공무원연금부담금	5,296	5,296	5,790	494	9.3
감가상각비	1	1	1	-	-
당기순이익	1	1	1	-	-
자 본 계 정	4,356	4,356	3,098	△1,258	△28.9
기본경비	183	183	183	-	-
자산취득	4,173	4,173	2,915	△1,258	△30.1

※총지출 = 총계 - 회계기금간(공무원연금부담금) - 계정간거래(감가상각비, 당기순이익)

※자료: 경찰청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손익계정에서 진료업무지원이 6억 6,500만원(2.7%) 증액되었고 자본계정에서는 자산취득이 12억 5,800만원(△30.1%) 감액되었음.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음.
- 경찰청은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제주자치경찰인력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위한 예산을 관리하고 있음.
-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지특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50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8억 6,000만원 대비 3.0%인 1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경찰청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2025예산안(B)	증감(B-A)	%
	본예산	추경(A)			
합 계(총지출)	4,860	4,860	5,006	146	3.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860	4,860	5,006	146	3.0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4,860	4,860	5,006	146	2.0

※ 자료: 경찰청

II. 검토의견

1. 세입 예산안

가. 일반회계

【생활안전교통국】

(1) 렌터카 및 리스 차량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그러므로 경찰청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중 과태료 예산은 2024년도 1조 1,340억 9,000만원 대비 1,901억 8,200만원 증액된(16.8%) 1조 3,242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차량관리 사업 예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304,618	1,218,215	1,404,168	185,953	15.3
벌금 및 과료	76,024	84,079	79,806	△4,273	△5.1
과태료	1,228,436	1,134,090	1,324,272	190,182	16.8
징계부과금	158	46	90	44	95.7

※자료: 경찰청

(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3년간의 과태료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8.9%에서 53.6%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은 2021년 약 8,946억 원에서 2023년 약 1조 609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과태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C/A	C/B		
과 태 료	'21년	699,607	1,759,607	860,688	123.0	48.9	894,690	4,229
	'22년	848,674	2,122,089	1,141,266	134.5	53.8	974,404	6,418
	'23년	969,554	2,293,491	1,228,436	126.7	53.6	1,060,986	4,069

※자료: 경찰청

- 과태료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일반적인 세입 예산의 취지 뿐만 아니라, 법규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면에서 과태료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과태료 중 렌터카 과태료에 대한 최근 5년간의 미납 현황을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과태료 부과 건수와 미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내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2020년 약 44만 5천여 건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3년에는 66만 4천여 건으로 약 50% 증가하였고, 미납액

은 2020년 59억 5,500만원에서 104억 6,400만원으로 약 75% 증가하였음.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6천여 건에서 2023년 1만 2천여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미납액은 2020년 1억 5,200만원에서 2023년 3억 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렌터카 과태료 미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부과건	부과액	미납건	미납액	부과건	부과액	미납건	미납액
2020년	445,507	25,738	74,032	5,955	6,004	384	1,901	152
2021년	546,772	31,098	88,687	6,543	7,306	448	2,292	167
2022년	676,987	38,449	126,284	8,594	9,001	521	2,840	187
2023년	663,944	37,431	165,309	10,464	11,965	705	6,052	390
2024년 8월	468,107	25,799	167,202	9,661	9611	6543	6,067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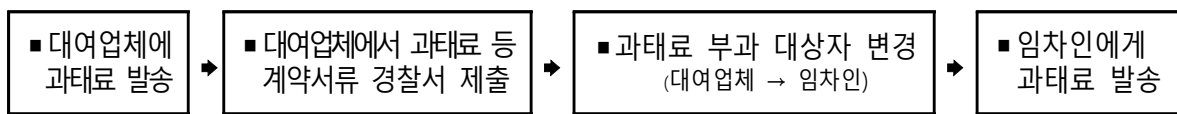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 과태료 부과액 대비 미납액의 비율도 내국인의 경우 2020년 약 23%에서 2023년 약 28%까지 증가하였고 외국인의 경우 2020년 약 40%에서 2023년에는 55%로 상승하여 부과액의 절반 이상이 미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렌터카 이용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발생하면 경찰청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렌터카 업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 때 렌터카 업체는 차량 임차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 등에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납부자를 임차인으로 변경 신청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재발송되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렌터카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전달 과정>



※ 자료: 경찰청

□ 이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인데,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가 출국하게 되면 과태료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임.

□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은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인 운전자에 대한 의무 부과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등을 포함한 고용주등에게 도로교통법상의 명령을 지키도록 주의·감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²⁾ 이에 따라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2)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결과적으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위반행위를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최근 대부분의 렌터카 이용은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렌터카 이용 계약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운전자의 위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외에 출국한 이용자로부터 과태료

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제16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7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업체가 먼저 과태료를 납부한 뒤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렌터카를 이용한 외국인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함으로써 출국 전에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등과 협조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세입의 편성 측면에서 과태료 수입은 부과 대상자의 납부 여부에 관하여 변동성이 있으므로 렌터카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징수율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세입 계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당해연도 주요 세출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체계적인 세입 편성 기준 마련을 통해 과태료 수납률을 향상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세출예산안

가. 일반회계

【총 괄】

(1)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된 비목변경 필요

- 가상화 시스템 라이선스 등 프로그램 구매(갱신) 비용을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는 등 비목에 맞지 않은 사업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적정 비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 경찰청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비목으로 편성된 사항이 일부 있음.
- ☐ 첫째, 안보수사역량강화(1231-316) 사업에서 수사장비 관리비 관련하여, 인터넷 회선 사용료, 네트워크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가상화 시스템 라이선스 갱신과 관련된 예산 4억 4,700만원이 시설장비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목인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되어 있음.
- ☐ 둘째, 수사경찰전문교육(4134-311) 사업에서 수사실습교육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사업과 관련된 예산 6,900만원이 각종 소모품, 수수료 및 사용료 등과 관련된 비목인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등을 구입하는 전산자원 구입비는 자산취득비(430-01)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된 안보수사역량강화 수사장비 관리비 예산 중 ‘가상화 시스템 라이선스 갱신’ 예산 1억 8,700만원은 상용 SW를 구매·갱신하는 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수사경찰전문교육 수사실습교육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예산 6,900만원도 상용 SW를 구매·갱신하는 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된 비목변경(안)>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비목변경(안)		변경액
			변경전	변경후	
안보수사 역량강화 (1231-316)	수사장비 관리비	인터넷 회선 사용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25 (비목유지)
		네트워크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135 (비목유지)
		가상화 시스템 라이선스 갱신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자산취득비 (430-01)	187 (비목변경)
수사경찰 전문교육 (4134-311)	수사실습교육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일반수용비 (210-01)	자산취득비 (430-01)	69 (비목변경)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기존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사업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비목에 편성·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따라서 경찰청은 상기 사업 외에도 2025년 예산안에 편성지침·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된 비목이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 통합 조치를 통한 운영 효율화 필요

- 경찰청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일정 성과를 거두었지만, 매년 증가하는 신규 사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2025년에는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요구됨. 따라서 경찰청은 통합 유지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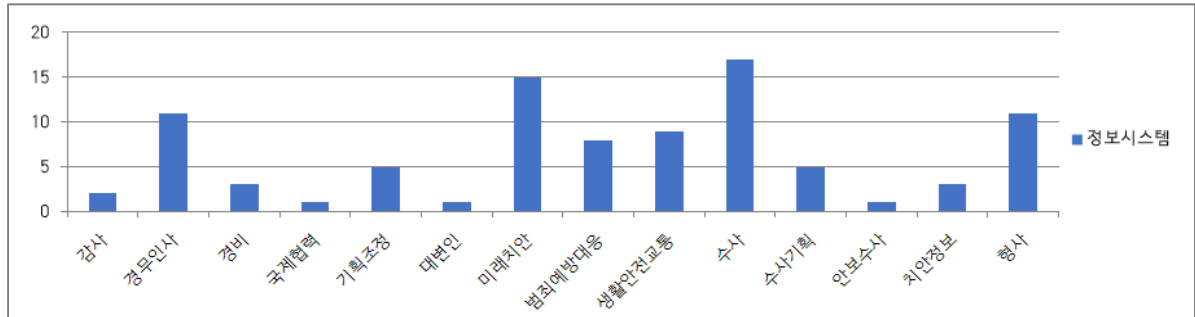
□ 경찰청의 지능·정보화(ICT) 사업은 치안 업무의 현대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수사 역량 강화뿐 아니라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경찰 업무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경찰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경찰청은 폴넷, KICS 등 109개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53개 시스템 자원(서버·DB 등)은 국가정보관리원(광주센터)⁴⁾, 56개 시스템은 본청과 부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음.

4) 행정안전부 책임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설립(05년 설립 / 대전 본원, 광주·대구센터), 경찰청 53개 시스템 자원은 광주센터에 입주 관리 중

<경찰청 정보시스템 현황>

(단위: 개)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지능 정보화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단계적인 정보시스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5개 시스템을, 2027년까지는 81개 시스템을 정보화기반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이러한 계획은 정보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통합관리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계약기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비	23억	44억	55억	72억	79.5억	93.04억	101억
시스템	19개	41개	44개	59개	60개	65개	66개
통합률	25%	55%	56%	77%	74%	82%	83%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41.3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보시스템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 유지관리와 정보시스템의 단계적 통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통합유지관리사업 예산 절감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SW 유지관리 평균 효율(A)		11.1%	11.2%	12.0%
경찰청 유지관리 효율(B)		8.99%	9.87%	8.48%
C(A-B)		2.11%	1.33%	3.52%
시스템 자산(D)	계	62,758,665	70,877,933	80,100,000
절감 효과(C×D)(천원)		1,324,208	800,921	2,018,520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의 지능 정보화 중장기 발전 전략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30건이 넘는 정보화 신규·고도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2024년에는 16개 사업에 총 375억 1,700만원의 예산이 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되고 있음.

< 연도별 경찰청 정보화 사업 현황 >

(단위: 건)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192	33	35	41	47	36
신규	73	9	8	14	20	22
고도화	119	24	27	27	27	14

※자료: 경찰청

- 이러한 상황은 정보시스템 통합 및 유지관리에 있어 경찰청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급변하는 ICT 환경과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더욱 강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관리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이 지능 정보화 중장기 발전전략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통합·통합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경찰청은 정보시스템의 통합과 통합 유지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화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정보화 관련 유지관리·고도화 등 사업 현황>

사 업		예산(백만원)
112시스템운영 (정보화)	순찰차 캠영상 관제시스템구축	7,015
	치안상황관리시스템고도화	3,075
	범죄분석시스템유지보수	60
과학수사역량강화	3D얼굴인식시스템개선	200
	3D촬영장비유지보수	179
형사·교통· 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AI음성인식 기술활용 피해조서 작성시스템 유지관리	319

정보업무전산화	견문관리시스템고도화	3,119
경무인사지원	경찰역사아카이브시스템유지보수	31
교통행정전산화	즉결심판시스템고도화	617
	도시교통정보센터 시스템보강	306
	서울청 교통정보센터 시스템보강	183
	교통경찰 전산시스템유지보수	418
외사경찰활동	인터폴전용통신망유지보수	
	보안장비유지보수	75
	인터폴 메일교환시스템 유지보수	10
	도난분실여권시스템 유지보수	65
과학수사시스템구축 (정보화)	지문 및 전과기록관리시스템 재구축	7,664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	사이버수사포털시스템개선	200
	사이버테러수사지원시스템 신규기능 구축	931
경찰유무선망개선	수배차량검색시스템 이중화 구축	2,211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실종경보문자송출시스템 유지보수	55
	실종경보문자송출 시스템 기능개선	250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61
	사회적약자종합플랫폼 시스템 구축	3,977
형사·교통·여성· 청소년범죄수사 역량강화	실종·수색 상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8
지능경제범죄수사 역량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338
과학수사역량강화	지리적프로파일링개선	756
수사인권보호활동	진술녹음실 SW유지관리	53
	진술녹음실 HW유지관리	26
형사사법업무전산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유지관리	2,705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2,677
합 계		37,517

※경찰청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

【기획조정관】

(1) 인건비(7101-111, 7101-112, 7102-114, 7102-115, 7102-116, 7102-117, 4302-111)

- 경찰청은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으로 기준정원 외 일반임기제 인력을 증원하고 있으나, 채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상황으로 채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간 인력운용 수요가 있으면 정규직 인력을 확보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현재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간 인력구성의 과도한 비대칭이 초래하는 문제점 및 주요국 경찰조직 운영현황 및 운용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수사 전문성 및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찰청 인건비(총액인건비) 사업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본부 인건비, 소속기관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예산안(기본경비 제외)은 2024년 예산 10조 355억 6,900만원 대비 4,725억 8,100만원 증액(4.7%)된 10조 5,08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인건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9,589,648	10,035,569	10,508,150	472,581	4.7%
경찰청 인건비	617,946	659,294	693,208	33,914	5.1%
시·도청 인건비	8,837,406	9,224,865	9,656,917	432,052	4.7%
소속기관인건비	93,712	101,269	107,818	6,549	6.5%
경찰병원인건비	40,584	50,141	50,207	66	0.1%

※ 자료: 경찰청

□ 총액인건비제도란 제도 운용의 주관부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가 총액인건비 대상기관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 등에 있어 자율성을 갖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임.⁵⁾

□ 경찰청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인건비 중 ‘자율항목’을 절감해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⁶⁾을 마련하고, 행정·지원 분야 중 일반직으로 대체할 수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정원 외 임기제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경찰청의 기준정원을 초과하는 일반임기제 계획상 정원은 908명임.

5) 주관부처는 매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공동지침)」을 마련하여 ‘총액인건비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직·정원, 예산,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대상기관도 이 지침에 따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통제를 받음.
또한, 총액인건비로 조직·정원분야를 운영하는 시행기관은 사전에 조직·정원이 변경되는 부서 또는 사업의 성과목표가 포함된 총액인건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처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제도를 운영한 뒤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6) 2024년 경찰청은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예퇴직수당 등에서 557억원을 절감하여 임기제 인력 증원 908명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마련할 계획임.

(나) 행정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 적극 채용방안
마련 필요

- 경찰청은 매년 2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50% 이하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임기제 채용현황>

구 분	'24년 上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선발예정	293명	416명	1,027명	333명	370명	456명
선발인원	109명	201명	608명	104명	145명	184명
미달인원	184명	215명	419명	229명	225명	272명
미달률	62.80%	51.68%	40.80%	68.77%	60.81%	59.65%

※자료: 경찰청

- 2023년과 2024년 2년간 채용공고를 낸 98개 분야 중 데이터기반 행정추진분야, 노무사 등 33개 분야는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용 인원이 한 명도 없으며,
- 물자·경력 수송 분야의 경우 181명 공고하여 41명 채용(23%), 수사 지원 분야의 경우 134명 공고하여 27명 채용(36%), 치안정책 홍보 역량 강화 분야의 경우 30명 공고하여 10명 채용(33%)되는 등 채용률이 미달되어 기존 인력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각종 경찰업무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2023년~2024년 채용이 저조한 주요 분야>

분 야	공고인원	채용인원	채용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18	9	50%
노무사	8	0	0%
공익신고 영상분석	9	2	22%
물자·경력 수송	181	41	23%
수사지원 인력	134	27	36%
치안정책 홍보역량 강화	30	10	33%
지문DB 고도화	29	12	41%
시민인권보호관	14	6	43%
화생방 안전	20	10	50%

※자료: 경찰청

- 이 중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2023년 신규 설립된 조직으로 그간 산재하여 있는 신고·접수 창구를 일원화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고, 민원 관련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임시 조직으로 직제화 이전에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하여 사기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당초 계획한 대로 동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것임.
- 채용 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채용공무원의 신분이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기간이 최대 4년(2년 임기, 최대 2년 연장)으로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지원율이 적고 지원자가 있어도 적격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적정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경찰청은 신림동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을 우선시하는 현장 인력 중심의 인력 배치를 위해 경찰청 및 지방청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2,700여명)하여 일선 수사·기동대 등의 치안현장 부서에 재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바,

행정·관리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기존 행정부서의 업무 부담 경감, 신규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서 수사 지원 업무 등 경찰관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공무원을 신속히 채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짐.

□ 따라서 경찰청은 현장 인력 중심의 인력 배치를 통한 범죄 예방 대응력 강화라는 경찰청 조직개편의 목적과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조기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목표한 인력이 채용되어 행정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직 공무원 채용 시스템 구축 및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또한, 장기적인 업무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인력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총액인건비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속 채용하기보다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수사 전문성 강화 및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방안 논의 필요

- 이상동기 범죄 증가, 수사부서 경찰관의 업무부담에 따른 극단적 선택, 지구대·파출소 축소·폐지를 담은 중심지역관서제도 시행,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범죄의 확산 등 최근 경찰조직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해결책으로 경찰의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현장 경찰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직종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⁷⁾⁸⁾
- 다만, 경찰 인력 증원은 현 정부의 공무원 인력 효율화 기조, 타 부처와의 형평성, 예산 제약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할 때, 현재 경찰청 인력 현황과 직종별 인력 구성, 그리고 주요 국가와의 인력 운용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7) 이데일리, "한국, 경찰 조직 내 일반공무원 비율 낮아", "행정업무 분산·치안 전문성 강화 필요성 ↑"(2024.10.7.)

8) '경찰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 토론회(국회 이광희 의원실·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위원회 공동 주관, 2024.10.7.)

□ 현재 경찰청의 전체 인력은 137,837명으로, 경찰공무원 131,158명(95.2%),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 임기제공무원과 교육직공무원은 6,603명(4.8%), 소방직 76명(0.06%)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일반직공무원은 5,673명(4.1%)임.

<최근 3년간 경찰청 인력구성 현황>

(2024년 7월말 정·현원 기준, 단위: 명, %)

구 분		총계	경찰관	의경	일반직	총액임기제	교육직	소방직
'22	정원	140,755 (100%)	131,004 (93.1%)	2,956 (2.1%)	5,712 (4.1%)	1,061 (0.8%)	22 (0.02%)	-
	현원	139,596 (100%)	132,595 (95.0%)	1,038 (0.7%)	5,358 (3.8%)	583 (0.4%)	22 (0.02%)	-
'23	정원	137,805 (100%)	131,046 (95.1%)	-	5,672 (4.1%)	1,061 (0.8%)	22 (0.02%)	4 (0.002%)
	현원	139,890 (100%)	133,760 (95.6%)	-	5,456 (3.9%)	648 (0.5%)	22 (0.02%)	4 (0.003%)
'24.7	정원	137,837 (100%)	131,158 (95.2%)	-	5,673 (4.1%)	908 (0.7%)	22 (0.02%)	76 (0.06%)
	현원	139,627 (100%)	133,540 (95.6%)	-	5,445 (3.9%)	616 (0.4%)	22 (0.02%)	4 (0.003%)

※자료: 경찰청

□ 2022년부터 현 정부의 공무원인력 축소 방향(매년 1%씩 5년간 총 5%)에 따라 전체 경찰청 인력(의무경찰 포함)은 정원 기준 2022년 140,755명에서 2024년 137,837명으로 2,918명이 줄었음. 이 중 경찰공무원은 2022년 131,004명에서 2024년 131,158명으로 154명 증가하였고, 일반직은 5,712명에서 5,673명으로 39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됨.

□ 경찰청 직급별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정·현원 비율을 살펴보면, 경위계급은 정원(13.3%) 대비 현원이 31.8%, 경감계급은 정원 8.3% 대비 현원은 17.9%로 정·현원 차이가 각각 18.5%(24,603명), 9.6%(12,861명)로 현원을 초과운용하고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경찰공무원의 경장 이하 계급에 해당하는 8급, 9급 이하 하위 직급의 현원(4,662명)이 정원(5,027명)보다 부족(△365명)한 것으로 확인됨.

경찰청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96.7%로 경감 이하 경찰관 97.0%로 비슷한 수준이나 일반직 7급과 9급에 상당하는 경사 이하 경찰관은 47.3%인데 7급 이하 일반직은 90.4%로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임.

<경찰청 직급별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정·현원 비율('23.12월말)>

경찰직	총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정원	131,046	1	7	30	80	639	3,080	10,903	17,406	28,679	31,397	38,824
	100%	0.6%(757)					2.3%	8.3%	13.3%	21.9%	24.0%	29.6%
운용* 정원	134,066	1	7	32	88	696	3,162	11,094	17,997	29,697	32,325	38,967
	100%	0.6%					2.4%	8.3%	13.4%	22.2%	24.1%	29.1%
현원	133,760	1	7	32	83	696	3,160	23,955	42,600	23,586	23,711	15,929
	100%	0.6%					2.4%	17.9%	31.8%	17.6%	17.7%	11.9%
정·현원 차이	306	5					2	-12,861	-24,603	6,111	8,614	23,038
일반직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운영포함)	
정원	5,542	96					90	347	1,012	2,284	1,731	
비율	100	1.7%					1.6%	6.3%	18.3%	41.2%	30.9%	
현원	5,341	76					92	511	2,009	1,129	1,524	
비율	100	1.4					1.7	9.6	37.6	21.2	28.5	

주1: 운용정원(134,066명) = 법정정원(131,046명)+타부처정원(181명)+별도정원(2,821명)+복수직종(18명)

주2: 일반직은 전문경력관·연구직(정원 130명) 제외

※자료: 경찰청

- 경찰 관서별 일반직 비율을 살펴보면 경찰청(본청)의 경우 총 정원 1,878명 중에서 일반직은 695명으로 37%를 구성하고 있으며,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등 수사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속기관의 경우 일반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시도경찰청의 경우 일반직 비율이 3.2%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경찰 관서별 경찰직·일반직 등 현황>

(2023.12.31. 정원 기준, 단위: 명, %)

직제별 \ 직종	총계	경찰직	교육 공무원	일반직	일반직비율
총 계	136,740	131,046	22	5,672	4.1%
경찰청	1,926	1,217		709	36.8%
시·도경찰청	133,504	541		747	3.2%
경찰대학	302	189	22	91	30.1%
경찰교육원	150	128		22	14.7%
중앙경찰학교	180	159		21	11.7%
경찰수사연수원	71	61		10	14.1%
경찰병원	607	4		603	99.3%

주: 소방직·임기제 제외

※자료: 경찰청

- 경찰청 본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기능별 현원을 보면, 경무(인사·조직·기획·예산), 과학수사, 미래치안 기능에 일반직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술적 분석을 특히 요구하는 과학치안 분야에 일반직 채용률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경찰청(본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기능별 현황>

('23. 12. 31. 현원기준, 단위: 명)

구분	계	기 능 별														
		대변인	감사	미래치안	경무	범죄예방 대응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정보	국제협력	과학수사	수사	형사	사이버	안보수사
인원	674	11	19	78	271	11	9	14	13	19	13	145	35	8	19	9

※자료: 경찰청

- 경찰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보수 수준의 차이를 보면, 경찰직 공무원의 보수가 기본급과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 등에서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경찰직이公安직급 상당의 기본급을 적용받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경찰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급여 비교>

(2024년 기준, 단위: 원)

경찰관				일반직			
계급 (호봉)	기본급	성과급 (평균)	직급 보조비 등	계급 (호봉)	기본급	성과급 (평균)	직급 보조비 등
치안정감 (20호봉)	7,522,700	7,666,950	890,000	1급 (20호봉)	7,289,100	7,666,950	890,000
치안감 (20호봉)	6,922,800	6,915,350	790,000	2급 (20호봉)	6,573,900	6,915,350	790,000
경무관 (20호봉)	6,311,200	6,257,650	640,000	3급 (20호봉)	5,949,100	6,257,650	640,000
총경 (20호봉)	5,603,000	5,761,150	540,000	4급 (20호봉)	5,248,600	5,761,150	540,000
경정 (15호봉)	4,576,800	4,858,850	390,000	5급 (15호봉)	4,361,400	4,858,850	390,000
경감 (15호봉)	4,087,100	4,648,820	325,000	6급 (15호봉)	3,736,800	4,262,280	325,000
경위 (15호봉)	3,754,700	4,201,560	325,000				
경사 (10호봉)	3,073,600	3,768,270	320,000	7급 (10호봉)	2,939,100	3,623,950	320,000
경장 (10호봉)	2,741,200	3,120,260	315,000	8급 (10호봉)	2,638,700	3,010,260	315,000
순경 (10호봉)	2,514,800	2,698,850	315,000	9급 (10호봉)	2,385,100	2,559,590	315,000

주1: 성과급 산정기준은 각 계급별 성과상여금(6급이하)·성과연봉(5급이상) 지급기준액×표준평균지급률
(성과상여금110%·성과연봉 5%) 적용하여 산정.

주2: 직급보조비 등은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합산하여 산정

주3: 명절휴가비·정근수당·연가보상비는 개인별 근무연수·연가보상일수 등에 따라 기본급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이외 수당은 근무 분야·업무 등에 따라 지급(경찰관·일반직 구분하지 않음)

※자료: 경찰청

□ 최근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각각 4,483명(88.2%), 602명(11.8%)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⁹⁾에 따르면, 향후 2년 이내 우선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대체 가능한 직무에 대한 응답 결과, 미래치안(정보화장비)이 가장 높고, 이어서 기획·경무·인사, 대변인(홍보), 부속기관, 감사 순서로 조사됐으며, 중장기적으로도 기획·경무·인사와 미래치안장비기능 분야, 대변인(홍보), 감사 등의 분야가 일반직으로 전환·대체해야 할 직무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구체적으로 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이 제출한 일반직 적합 분야는 경무기능 중 미래치안·인사·시설·기획, 홍보 분야, 교통기능 중 행정처분 분야, 과학수사 기능에 검시·감식·법의학 분야 등이 있음.

<기능별 일반직 적합 분야 현황>

(단위: 명, %)

구분	경무	범예여청	교통	경비정보	국제협력	과수	사이버	수사형사	안보	부속기관
경찰	5,279 (64%)	14,195 (99.1%)	7,012 (90.6%)	19,112 (99.2%)	49 (87.5%)	1,348 (74.3%)	1,298 (97.5%)	29,507 (98.7%)	2,307 (98.9%)	549 (40.7%)
일반직	2,969 (36%)	133 (0.9%)	719 (9.4%)	156 (0.8%)	7 (12.5%)	467 (25.7%)	33 (2.5%)	366 (1.3%)	24 (1.1%)	799 (59.3%)
일반직 적합분야	미래치안, 인사, 시설, 기획, 홍보	-	행정처분	-	-	검시·감식 법의학	디지털 포렌식	수사지원	-	치안 R&D, 교육

주1: 소방직·임기제 제외, 경무기능에 경무·미래치안(정보화장비)·감사·홍보 기능 포함

주2: 이광희 의원실과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위원회 공동주관한 '경찰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10. 7.)」에서 언급된 일반직 적합 분야를 토대로 작성

※자료: 경찰청

9) 설문조사 개요

- 조사의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지부
- 조사주체: 한국시민교육연합
- 조사대상: 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 조사기간: 2024.5.7. ~ 5.14(8일간)

□ 해외 주요국의 일반직공무원 비율을 조사한 연구용역보고서¹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영국 37%, 미국 31.6%, 호주 28.9%, 캐나다 28.3%, 프랑스 18.8%, 독일 14.7%, 일본 11.2%로 나타나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원 기준 4.8%로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경찰청의 인적 구조가 철저히 경찰관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2023년 주요 국가 경찰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

국가별 공무원 유형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정원	현원							
합계	137,768 (100%)	138,910 (100%)	1,108,545 (100%)	233,832 (100%)	248,138 (100%)	349,100 (100%)	296,302 (100%)	105,665 (100%)	90,558 (100%)
경찰공무원	131,151 (95.2%)	132,780 (95.8%)	758,707 (68.4%)	147,430 (63.0%)	201,574 (81.2%)	297,700 (85.3%)	262,093 (88.5%)	71,472 (67.6%)	64,363 (71.1%)
일반직공무원 등	6,613 (4.8%)	6,126 (4.2%)	349,838 (31.6%)	86,402 (37.0%)	46,564 (18.8%)	51,400 (14.7%)	33,327 (11.2%)	29,960 (28.3%)	26,195 (28.9%)

※자료: 이상수 외, 「경찰청 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국가공무원노동조합(경찰지부) 연구용역보고서(2024.8.)

□ 이러한 경찰직 공무원 중심의 인력구성은 수사전문성과 업무 효율을 강화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데, 2017년 경찰청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¹¹⁾에 따르면, “급여, 후생, 복지, 청사 관리, 유무선 통신, 전산, 방비 등 범 집행 업무와 1차적 관련성이

10) 이상수 외, 「경찰청 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지부 연구용역보고서.

11) 이상수 외, 「경찰 직무별 직종 적합성 분석을 통한 경찰직과 일반직간 정원대체 추진 방안」,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17, p73.

낮고 일반에 적합한 업무 분야에 상당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라면서 이들 경찰관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업무가 숙달될 즈음 다시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바뀌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음.

또한, 최근 ‘경찰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외국의 경우 행정업무와 법 집행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경찰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위해 일반직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이 맡아야 할 사무보조와 연구 등을 맡는 인력이 4.2% 불과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며, 현장치안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조직 진단과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경찰청도 이 문제를 인식하여 2017년 「경찰직과 일반직 간 정원 대체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18년에는 인사제도 개혁 추진 회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현장 관련성이 낮은 내근 직위를 중심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인 바 있음. 그러나 이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나 정책 추진이 정체된 상황으로, 현재는 일반직공무원 비율확대에 관한 관심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청도 일반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2018년부터 일반직 증원을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 인력 정책의 중심이 ‘효율화’에 있어 일반직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임.
- 일반행정직보다 인건비가 높은 경찰관을 일반 행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지므로, 경찰청은 현재의 경찰조직의 인력구성의 과도한 비대칭이 초래하는 문제점 및 주요국 경찰조직 운영현황 및 운용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수사 전문성 및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미래치안정책국】

(1) 경찰청 R&D

- 경찰청 R&D 예산 관련 사업 규모에 비해 세부사업의 수가 많고 사업 명칭과 성격에서 유사성을 나타내는 사업이 존재하는바, 사업성과 관리 강화 및 연구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는 등 R&D 사업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국제협력형'(R&D) 과제 착수에 앞서, 연구 주제 선정, 협력 대상국 물색, 연구 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수행하고, '사전검증연구' 단계부터 과제 수행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국제공동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가) 개 요

□ 경찰청은 2014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연구개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이후, 2015년부터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경찰청은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임무중심형 R&D'를 수행하고자 매년 새롭게 현장의 연구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2015년 22억원이었던 예산은 2024년 567억으로 늘어났고, 세부사업 수도 2015년 1개에서 2024년 15개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총 17개의 세부사업¹²⁾(신규사업 수 4개), 38개의 내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총 640억원을 편성하였음.

12)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총 15개의 세부사업 중 '미래형국민치안서비스개발(R&D)', '국민위해인자에대응한기체분자식별분석(R&D)' 사업 등 2개 사업이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2025년 예산안(정부안)에 4개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2025년 예산의 세부사업 수는 총 17개임

< 경찰청 R&D 예산 및 내역사업 현황 등 >

(단위: 억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안)
예산	22	51	97	133	186	225	492	592	674	567	640
세부사업 수	1	1	3	5	7	10	13	13	14	15	17
내역사업 수	3	4	9	12	16	22	31	31	32	36	38

※자료: 경찰청

< 경찰청 R&D 세부사업 현황 >

(단위: 억원)

연번	사업명	'23년 결산	'24년 예산 (A)	'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1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4431-402)	79.20	53.93	49.40	△4.53	△8.4
2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 개발(R&D) (4431-620)	58.21.7	40.25	33.81	△8.24	△19.6
3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R&D) (4431-631)	80.808	74.76	45.29	△29.47	△39.4
4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R&D) (4431-634)	222.60	220.90	185.09	△35.81	△16.2
5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R&D) (4431-635)	22.00	15.36	16.32	0.96	6.3
6	경찰장비개선(R&D) (4431-706)	24.00	23.59	33.80	10.21	43.3

연번	사업명	'23년 결산	'24년 예산 (A)	'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7	과학치안 공공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시범사업 (R&D)(4431-707)	37.636	14.64	18.45	3.81	26.0
8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기술 개발 (R&D)(4431-709)	23.40	18.72	31.20	12.48	66.7
9	사이버수사 지원 기술 개발 (R&D)(4431-707)	18.72	18.97	53.04	34.07	179.6
10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R&D)(4431-713)	15.00	9.34	13.73	4.39	47.0
11	경찰건강 스마트관리(R&D) (4431-715)	63.82	46.36	64.90	18.54	40.0
12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 (4431-718)	-	5.00	15.00	10.00	200.0
13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 관리기술 개발(R&D) (4431-720)	-	10.92	19.76	8.84	81.0
14	공공수요 기반 치안현장 적용 연구개발(R&D) (4431-723)	-	-	9.36	9.36	순증
15	능동형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형 플랫폼 기반 솔루션 개발(R&D) (4431-724)	-	-	6.92	6.92	순증
16	사이버범죄 수사단서 통합 분석 및 추론 시스템 개발(R&D)(4431-726)	-	-	36.40	36.40	순증
17	경찰작전 능력 향상 기술 개발(R&D) (4431-729)	-	-	7.80	7.80	순증

※ 자료: 경찰청

(나) 경찰청 R&D 사업체계 정비 필요

- 경찰청의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R&D의 투자 방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세부사업 중에서 ‘치안 현장’이나 ‘사이버’와 같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이 다수 있어 사업간 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 20억 이하의 소액 사업들이 대다수(80%이상)를 구성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경찰청 R&D 예산 규모별 과제 현황(내역사업 기준) >

(단위: 개,%)

	계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2023년	32	13	10	5	4
	(100%)	(40.6%)	(31.3%)	(15.6%)	(12.5%)
2024년	36	20	11	2	3
	(100%)	(55.6%)	(30.6%)	(5.6%)	(8.3%)
2025년 (안)	38	20	10	2	6
	(100%)	(52.6%)	(26.3%)	(5.3%)	(15.8%)

※ 자료: 경찰청

-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17개 세부사업 중에서 목표와 사업 수행 방식이 유사한 사업들이 다수 있는데, ①‘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②‘과학치안 공공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R&D)’, ③‘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R&D)’, ④‘공공수요 기반 치안현장 적용 연구개발(R&D)’ 등 4개 사업은 사업 목표가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에 보급 가능한 솔루션(장비,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는 유사점이 있으며,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절차 또한 연초에 치안현장의 연구개발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3개월 가량의 사전 준비 후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유사한 사업수행 구조로 되어있음.

< 경찰청 R&D 유사 세부사업 현황 >

사업명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4431-402)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R&D)(4431-707)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R&D) (4431-713)	공공수요 기반 치안현장 적용 연구개발(R&D) (4431-723)
목적	원천기술을 활용한 실증 중심의 연구 개발을 통해 치안 현장에 적용할 솔루션 개발	원천기술 또는 치안분야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고도화 등을 통한 성과물의 현장 적용 촉진	미래 치안 위협 요소에 대한 선제적 기초 연구 및 연구개발 기반 조성	치안 현장의 문제에 대한 다원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강구 및 신속한 현장 적용 촉진
기간	’21년~’27년(7년)	’22년~’27년(6년)	’23년~’28년(6년)	’25년~’30년(6년)
목표 기술성숙도 (TRL)	5~8	8 이상	2~3	5~8
연구성격	응용개발	응용개발	기초원천	응용개발
과제 선정 절차	선기획연구 (3개월) 후 선정	사전기획 (3개월) 후 선정	수요 검증(3개월 이내) 내지 자유공모	사전검증연구 (3개월) 후 선정
과제당 연구기간	2.5년~3.5년	2년~3.5년	1년~2.5년	1.5년~3.5년
참여부처	경찰청 과기정통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자료: 경찰청

□ 가령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4431-402)’에서 수행한 ‘경량 내충격성 경찰부대 안전방패 개발¹³⁾’ 과제는 현장의 수요를 토대로 원천기술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

13) 이중 구조로 튼튼하고 내충격성을 지니면서도 투명하고 경량화된 다기능의 방패를 제작(’21~’23, 12.5억)

용화 촉진 시범사업(R&D)(4431-707)’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더라도 무방해 보이며,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R&D)(4431-707)’에서 기존에 수행한 ‘지능형 범보행 분석 프로그램 개발¹⁴⁾’ 과제는 수사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연구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4431-402)’ 사업의 연구과제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경찰청이 비슷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주요한 이유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지원규모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법」 제 38조¹⁵⁾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수행하게 되면 동 규정의 제한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됨¹⁶⁾.

□ 그런데 사업목적과 연구방식이 비슷한 사업을 신규 세부사업 형태로 편성하게 되면, 각 사업별로 사업기획, 예산 심의, 각종 평가¹⁷⁾,

14) CCTV상 얼굴이 촬영되지 않은 용의자나 실종자의 걸음걸이를 분석하여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추적에 활용하는 프로그램('22~'24, 7.05억)

1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16)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개별 세부사업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성숙도(TRL)가 다르고, 그에 따라 과제당 연구 기간과 추가 연구개발 필요 여부 등에서도 차이점이 있으며, 또한, 사업 규모에 있어서도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을 신설하였다는 의견임.

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근거하여 연차점검(매년), 단계평가(단계 종료 시), 중간평가(평균 3년 주기), 최종평가(과제종료 시), 추적조사(종료 후 5년간) 등 각종 평가가 이루어짐

성과 창출 및 확산 등의 업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과 역량이 분산되며 이는 경찰청과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과학치안진흥센터’의 인력(연구원 17명)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행정 측면에서 과부하 내지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현재 경찰청의 R&D 사업구조는 치안 관련 특정 원천기술을 확보하려고 할 때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R&D) 사업’으로 착수해야 하며, 이를 활용하는 응용기술 개발 연구는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R&D) 사업’으로 진행하고, 기술고도화는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R&D)’에서 추진해야 하는 등 하나의 과제로 연구성과를 도출하기까지 총 3가지 사업을 거쳐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데,

유사한 목적과 사업수행 방식을 지닌 신규 세부사업을 계속 신설할 경우, 자칫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을 신규사업에 충분히 반영하는 환류 절차가 미흡해질 수 있음.

- 따라서 경찰청은 신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유사한 목적의 기존 세부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목적과 수행 방식이 유사한 사업을 통합·조정해 기초연구부터 응용개발, 실용화까지 단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R&D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 국제협력형 연구과제의 내실 있는 사전 준비 필요

□ 공공수요기반치안현장적용연구개발(R&D)(4431-723)은 치안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솔루션을 연구·개발한다는 목표하에 ‘현안대응형’, ‘신속시범형’, ‘국제협력형’ 등의 연구 유형을 담은 신규 R&D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 9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공공수요기반치안현장적용연구개발(R&D) 연구 유형 >

유형		목적	기간	연구대상	지원규모	특징
사전검증연구		사전 검증 및 실증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통한 현장적용 R&D의 성공률 제고	3개월	사전 검증이 필요한 현안대응형과 국제협력형 과제	과제당 50백만원	경쟁형 R&D
현 장 적 용 R& D	현안 대응형	치안 기술을 현대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성 확보	2.5년 (30개월)	치안현장의 현재 이슈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제품 연구개발	과제당 400백만원	치안현장 수요/적용기술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현장 적용
	신속 시범형	혁신적인 치안 기술 및 솔루션을 신속하게 발굴, 시험 및 현장 적용	1.5년 (18개월)	기 개발된 원천기술 타 분야 제품/서비스, 폴리스랩 2.0 중 성과 연계가 가능한 연구과제	과제당 600백만원	폴리스랩 2.0과 타 사업의 구성과의 연계를 통한 신속한 현장 적용
	국제 협력형	국내 산·학·연과 해외의 우수한 R&D 기관 간 협력 촉진	3.5년 (42개월)	국제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공동으로 연구가 필요한 치안분야 연구	과제당 800백만원	다양한 국가의 범죄패턴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효과적인 국제적 범죄 대응체계 수립

※ 자료: 경찰청

□ 동 사업의 연구유형 및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① ‘현안대응형’ 과제는 이슈가 되는 치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맞춤형 장비와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5년 3개 과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매년 3개씩 총 9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할 계획임.

② ‘신속시범형’ 과제는 치안 분야 또는 타 분야에서 개발한 기술과 성과물을 신속하게 치안 분야에 활용하고자 추가 개발이나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2026년 3개 과제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할 계획임.

③ ‘국제협력형’ 과제는 초 국경적 범죄에 맞서 공동의 치안 문제를 안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의 공동연구 개발 및 실증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2026년 1개 과제, 2027년 1개 과제 등 총 2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할 계획임.

□ 동 사업의 특이한 점은 경찰청이 2015년 첫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한 이후 특정 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없었는데 동 사업에 처음으로 ‘국제협력형’ 연구 유형을 도입했다는 것으로, 경찰청은 2025년에 사전 준비를 완료한 뒤,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1개씩 총 2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2030년에 종료할 계획이라 설명함.

- 다만, ‘국제협력형’ 과제의 경우 경찰청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명확한 기술개발 목표 설정, 연구 대상 기술과 협력 대상국가 선정, 연구 수행 방식 결정 등 철저하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수적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 국제공동연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협력 대상 기술의 명확한 규정과 해당 분야 선도국가 특정 등 선행 작업이 필수적이나 경찰청은 현재 ‘국제협력형’ 연구과제의 선정 기준만을 마련하였을 뿐, 구체적인 개발 대상 기술, 협력 대상국 및 협력 방식, 연구성과의 귀속 등 사업의 핵심 체계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연구 수행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국제협력형 연구 유형 선정평가 기준(예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계획(30)	◦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도전성	15
	◦ 연구개발 목표/추진방법의 타당성, 수행계획의 구체성	15
연구자 역량(30)	◦ 국내 연구자(팀)의 연구개발 역량	10
	◦ 해외 연구자(팀)의 연구개발 역량	10
	◦ 연구팀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국제협력(30)	◦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10
	◦ 공동연구 수행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 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정도 및 상대기관의 기여도	10
성과활용 기대효과(10)	◦ 국가 전략기술 확보 가능성 및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5
	◦ 연구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	5

※자료: 경찰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에 따르면, 국제공동연구 추진 유형을 해외기관 참여방법·협약여부·수행방식·평가방식별로 ‘일반형’, ‘공동기관형’, ‘별도 과제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치안 분야의 특수성과 경찰청 고유의 사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연구방식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제공동연구 추진 유형>

구 분	일반형	공동기관형	별도 과제형
해외기관 참여방법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계획 등에 따라 해외기관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	해외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국내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각 별도의 과제를 구성하고 연구 내용상 협력
협약여부	해외기관과 협약 없음	전문기관-해외기관 협약 체결	해외기관과 협약 없음
수행방식	연구개발기관 외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국가별 별도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지급 방식	계좌이체 (국내기관이 지급)	계좌이체 (전문기관이 지급)	해외기관에 지급 없음 (해당 국가에서 지급)
선정·결과 평가방식	해외기관에 대한 별도 평가 없음 (국내기관의 연구계획서 및 최종평가 등에 포함)	과제단위로 평가 실시	사업별 평가방식 상이 (개별, 공동, 연계 등 가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매뉴얼 p5(2024.2.)

□ 국제협력형 연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계획이 미비할 경우, 우수한 역량을 가진 국가 및 연구기관 선정의 어려움, 참여 기관들의 역할 수행 미흡,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의 부실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2024.10.8.) 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국제협력 부문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으며, 준비없이 늘어난 국제협력 R&D 예산이 구체적 성과없이 수준 미달 외국 학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경찰청의 동 사업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엄격한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¹⁸⁾

- 경찰청은 '국제협력형'(R&D) 과제 착수에 앞서, 연구 주제 선정, 협력 대상국 물색, 연구 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수행하고, '사전검증연구' 단계부터 과제 수행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국제공동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18) 경향신문, R&D 예산 축소 여진...국제협력 '이상 급증' 왜? (2024. 10. 8.)

(2) 장비관리유지(4231-314)

- 경찰청은 구형 전자충격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전자충격기를 치안 현장에서 병행 사용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방지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전자충격기를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보급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장비관리유지 사업(4231-314)은 경찰의 현장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보급하고 전시 증원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무기·장구를 비축하며 경찰 장비 운용에 필요한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381억 8,900만원 대비 55억 1,000만원 증액(14.4%)된 436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장비관리유지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장비관리유지	24,286	38,189	43,699	5,510	14.4
현장장비구입	6,407	15,858	15,407	△451	△2.8
전시비축물자	1,839	3,694	3,514	△180	△4.9
장비유지관리 운영	15,289	17,884	24,025	6,141	34.3
노후최루장비 불용	751	753	753	0	-

※자료: 경찰청

(나) 전자충격기 교체사업 시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한 계획 마련 필요

□ 경찰청의 충기보조장비(전자충격기) 사업은 현장에서 범인을 안전하게 제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충격기를 도입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56억 1,000만원으로 2024년 27억 5,500만원 대비 28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경찰청에 따르면 보유 중인 전자충격기 13,786정¹⁹⁾ 중 64.3%에 해당하는 구형 전자충격기(X26E) 8,870정의 경우 제조사에서 생산과 전용 배터리 판매를 중단해 향후 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2연발 기능, 상·하 레이저 조준기능 등이 강화된 ‘테이저 7’ 신형 전자충격기 구매 예산을 편성하여, 2027년까지 구형 전자충격기(X26E)를 대체하려는 계획임²⁰⁾.

19) 2023년 12월 말 기준. ①테이저X26E(단종), ②테이저X26P 2개 모델을 보유. 이중 단종된 ①X26E 모델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자충격기로 ③테이저 7을 구매.

20) 2024년 9월 기준 신형 전자충격기인 美 AXON의 테이저7 1,220정을 '23년 예산(31.4억원)으로 구매 및 보급.

구 분		①테이저 X26E	②테이저 X26P	③테이저 7
사 진				
무 게		355g	422g	466g
전 장		200mm	220mm	200mm
발사방식		단발(카트리지 동일)		2연발
레이저포인터		1개(상부)		2개(상·하부)
최대 사거리		6.4m		7.6m
가격	본체	-	200만원	216만원
	카트리지	4.3만원		3.7만원

- 신형 전자충격기 보급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경찰청에서는 구형(X26E) 및 신형(X26P) 전자충격기와 테이저7까지 총 3종의 전자충격기가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으로, 현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전자충격기를 혼용하게 되어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경찰청은 2024년 테이저7 전자충격기 도입·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소속 22개 경찰서를 1차 보급 대상으로 선정해 기존 전자충격기를 전량 회수하고 신형 전자충격기를 보급하여 지방청별로 장비를 통일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설명임²¹⁾.
- 전자충격기는 본체 외에도 사용을 위해 제조사의 인증을 받은 카트리지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단발 카트리지와 연발 카트리는 호환되지 않으므로 전자충격기를 안정적으로 혼합 운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보급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경찰청은 이미 R&D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러한 장비의 신규 도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자충격기 본체와 카트리지 등에 대한 표준 규격을 명확히 하여 신규 장비의 도입과 보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1) 경찰청은 현장에서 신형 전자충격기를 차질 없이 사용하기 위해 ①전문교관 양성 ②관서별 교관 양성 ③전체 사용자 교육 順으로 단계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테이저7의 세부 기능과 작동법이 포함된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중이라는 의견임.

(3) 경찰기동력강화(4231-311)

- 경찰청은 순찰차용 중형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완성차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가격·품질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순찰차에 사용되는 특장업체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며, 계약 이후에도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품질 향상과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은 노후 경찰차량 교체 및 순찰차·업무차량 지원 등을 통하여 현장 경찰의 기동력을 확보하고 치안력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914억 5,800만원 대비 27억 100만원 감액(△3.0%)된 887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경찰기동력강화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경찰기동력강화	88,878	91,458	88,757	△2,701	△3.0
노후차량교체	82,760	80,530	83,981	3,451	4.3
증차	5,555	10,338	4,186	△6,152	△59.5
버스임차	590	590	590	-	-

※ 자료: 경찰청

(나) 순찰차용 중형승용차 공급 제조사 다양화 등 순찰차 품질 향상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 경찰청은 매년 기동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순찰차를 구매하고 있음. 최근 6년간 연도별 순찰차 구매 수량을 보면 2019년에는 총 992대의 순찰차를 구매하였고, 2024년에는 현재 1,048대의 구매 절차가 진행중으로 연간 1천여대의 순찰차를 구매하고 있음.

<연도별 순찰차 구매 수량>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수	단가	대수	단가	대수	단가	대수	단가	대수	단가	대수	단가
112 (파출소 지구대) · 교통	전기	-	-	-	-	10	6,815	217	7,114	170	7,150	181	6,945
	수소	-	-	4	7,675	19 (넥쏘)	7,903	45 (넥쏘)	7,919	36 (넥쏘)	8,234	36 (넥쏘)	8,524
	소형 (0번대)	16	2,425	-	-	-	-	-	-	-	-	-	-
	SUV (투싼)	68	3,467	115 (싼타페)	4,049	-	-	-	-	31 (투싼)	4,304	100 (투싼)	4,460
	중형 (소니타)	818	3,037	856 (소니타)	3,037	782 (소니타)	3,355	673 (소니타)	3,534	670 (소니타)	4,190	616 (소니타)	4,155
교통	고속 (소니타)	90	3,037	25 (소니타)	3,037	40 (그랜저)	4,895	75 (그랜저)	4,900	53 (그랜저)	5,599	89 (그랜저)	5,830
						12 (싼타페)	4,604						
	암행	-	-	39 (G70)	5,457	18 (G70)	5,516	5 (G70)	5,516	12 (G70)	5,711	26 (G70)	5,917
								10 (소니타)	3,411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2024년도에는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을 통해 중형순찰차를 구매하고 있음. 2023년 이전에는 조달청의 일반경쟁계약 절차를 통해 중형순찰차를 구매하였으나 2023년 조달청의 입찰 과정에서 3차례의 유찰이 발생하는 등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조달청과 자동차 제조사 사이에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순찰차의 사양과 단가의 적정성을 확인 후 구매하였고, 2024년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순찰차를 구매하고 있다는 설명임.
- 현재 나라장터에는 순찰차용 특장이 완료된 배기량 2000cc급 차량은 완성차업체에서 등록한 상품과 특장업체에서 등록한 상품 2종류가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하나의 완성차 업체에서 제작한 차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이는 순찰차용 승용차를 경찰청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완성차에 경찰 업무에 필요한 경광등과 같은 특수장치를 부착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임.
- 순찰차에 필요한 주요 특수장치에는 경광등, 안전칸막이, 장비함 등의 물리적 시설부터 멀티캠과 이와 연동된 녹화 카메라 시스템·경광등 제어를 위한 통합 게이트웨이와 같은 ICT 장비 등이 있음.
- 경찰청은 순찰차용 중형차를 구매함에 있어 다음 두 가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순찰차용 중형차를 공급하는 제조사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현재와 같이 순찰차를 하나의 완성차를 기반으로 운용하게 되면 부품을 통일적으로 공급받아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품 수급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한 업체로부터의 공급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연간 순찰차의 보급 과정이 업체의 사정에 영향을 받게 되고, 협상력 약화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이러한 점은 장기적으로 경찰청의 기동력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순찰차량 요구·편성단가 및 실제 구매단가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 단가 (A)	편성 단가 (B)	구매 단가 (C)	단가 차이 (C-B)
순찰차	전기중형순찰차	6,800 (94.5%)	5,930 (82.5%)	7,190	1,260
	수소전기순찰차	7,900 (95.1%)	7,000 (84.3%)	8,300	1,300
	중형112순찰차	4,600 (109.5%)	3,699 (88.0%)	4,200	501
	고속순찰차	5,900 (104.7%)	5,000 (88.8%)	5,630	630
	암행순찰차	5,500 (96.5%)	5,500 (96.5%)	5,700	200

※요구단가(A), 편성단가(B) 아래 괄호는 실제 구매 단가 대비 요구·편성단가 비율임

※자료:경찰청

□ 둘째, 특장업체간 품질 향상과 기술 발전을 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현재 경찰청은 특장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을 통해 순찰차를 공급받고 있으며, 경찰청은 특장의 사양만을 정하고 공급업체가 특장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장점으로는 한 종류의 순찰차에 하나의 계약 상대방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사후 관리가 용이하며, 납품 이후에도 공급업체와 피드백을 주고받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음. 그러나 완성차 제조 업체가 다양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납품 특장업체 입장에서는 품질 향상이나 기술 발전보다 원청과의 계약 관계 유지를 중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음.

□ 경찰청은 최근 3년간 현실 단가에 맞는 순찰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상해왔으며, 그 결과 편성 단가가 실제 구매 단가의 90% 수준까지 근접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편성단가의 현실화는 향후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복수의 완성차 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능 개선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형순찰차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성능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범죄예방대응국】

(1)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1132-311)

- 경찰청은 공식적인 바디캠 도입 전까지 무등록 바디캠이 임의로 사용되고, 개인정보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개별 구매 바디캠 현황을 파악하여 등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사업(1132-311)은 112시스템 운영 및 대민 접점 부서인 지역경찰의 다양한 활동과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치안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63억 3,000만원이 증액된 (22.7%) 34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 관리	22,352	27,920	34,250	6,330	22.7

※자료: 경찰청

(나) 사적구매 바디캠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경찰 바디캠 도입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경찰을 향한 폭언·폭행 등 난동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용·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기능의 장비 도입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 77억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경찰 바디캠 도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경찰 바디캠 도입	-	-	7,714	7,714	신규

※자료: 경찰청

동 사업은 2025년부터 2년 동안 현장부서(지역경찰·교통·기동순찰대) 일시점 근무인원 총 17,533명 전원을 대상으로 바디캠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총 구매장비 대수의 1/2인 8,766(1대당 88만원)대를 도입할 예정임.

- 도입 경과를 살펴보면, 과거 경찰청에서는 2015년 정부지원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바디캠)’ 기기 예산을 편성하여 100대를 시범 운영하였으나, ① 명시적 수권규정 부재 ② 추가 예산 미확보 ③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2021년 8월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기기를 폐기 조치하였음.

□ 이후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22)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신설(’23. 9.시행)되고, 2024년 1월 ‘경찰착용기록장치’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장비’로 규정되는 등 바디캠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요건 및 고지 등 법위임사항과 바디캠 공식 도입 전까지 개별 구매 바디캠의 한시적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24.7.시행)을 제정하였음.²³⁾

특히, 바디캠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는 ①사용범위(동조 제1항, 제2항), ②영상 등 촬영시 고지(제3항), 영상 촬영 시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 준수 의무(제4항)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 사용규정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바디캠 사용 규제를 강화하였음.

2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생략)
-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3) 경찰청은 법 개정 전에도 증거수집, 단속, 공무집행방해 대응 등을 위해 개별적으로 바디캠을 구매·사용해온 만큼, 바디캠 공식 도입 전이라도 업무 목적으로 사적구매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디캠 등록, 관리책임자 등 지정, 운영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지역경찰 바디캠 운영·관리방침(’23.9)」을 마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범위 · 준수사항 주요 내용>

사용범위		▶ △정보주체 동의 △법령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불가피성) △법령 등 소관업무 수행(불가피성)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필요성) △공중위생 등 공공 안전·안녕(긴급한 필요성) △범죄·화재·재난 등 구조·구급(필요성)
준수 사항	표시(고지)	▶ 불빛·소리·안내판·안내서면·안내방송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방법 ※ 표시만으로 족함 / 수사·증거수집 등 불가피한 경우 미표시 가능
	촬영 영상 등 ‘안전성’ 확보	▶ △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권한 제한 △암호화·위변조방지 기술 적용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보안 조치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바디캠 사용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역경찰 바디캠 운영·관리방침(’23. 9)」을 제정하였는바, 이 방침에 따르면 그간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바디캠 등의 기기를 소속 지역경찰관서별 등록대장에 사용자별로 추가 등록해야 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영상 등을 촬영할 때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기기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용 기준 및 영상음성기록관리 등 세부 운영지침 마련(’23. 9월)

① 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② 장비관리 ③ 사용 요건 ④ 준수사항
⑤ 보관 및 관리 방안 등 ⑥ 영상 등의 관리 ⑦ 사용자 교육 ⑧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사용 ⑨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의 23년 8월 바디캠 소유현황 조사시 총 6,380대²⁴⁾의 사적 바디캠이 사용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던 바디캠 장비가 2024년 9월 현재 공식적으로 총 2,224대가 등록되어 활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정확한 사적 사용실태는 경찰청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하고 있음.²⁵⁾

□ 그런데 현재 현장 경찰관들이 사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바디캠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분실·도난·유출·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영상 안전성 확보의무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고,²⁶⁾ 촬영한 영상을 임의적인 삭제·편집 없이 30일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삭제·편집 및 선별적인 파일저장도 가능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촬영 영상 등 안전성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역경찰 바디캠 운영·관리방침」상 개별 구매한 바디캠의 등록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촬영 영상을 개별적으로 보관하게 되면 촬영된 영상 임의삭제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²⁷⁾

24) ‘23.8월 기준, 지역경찰 5,977대, 교통 403대

25)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요구하는 규제를 반영한 운영·관리 방침 시행이 현재 경찰관들에게는 개인의 사적 재산(바디캠)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인식하여 전에 비해 오히려 바디캠 사용이 위축된 결과로 설명함.

26)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 영상 전송 시 파일 암호화를 통해 전용 뷰어 프로그램으로 영상확인을 하여야 하며, 영상에 대한 임의적인 편집, 삭제를 방지하고자 촬영 종료 후 자동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기능이 필수적이나, 현재 개별구매 바디캠은 해당 기능이 없는 상황임.

27) 시사저널, 「‘인천 흥기 난동’ 피해자 측 “출동 여경, 바디캠 영상 삭제했다” 주장」(2022.4.5.)
경향신문, 「구조 중 찍힌 알몸영상 따로 옮긴 소방대원에 고작 ‘경고」(2022.1.19.)

□ 따라서 경찰청은 공식적인 바디캠을 신속히 도입하되, 도입 전까지 무등록 바디캠이 임의로 사용되고, 개인정보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개별 구매 바디캠 사용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등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생활안전교통국】

(1) 도로교통공단출연(출연금)(1331-314)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학원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도로교통공단출연(출연금) 사업(1331-314)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방송·운전면허시험관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도로교통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 1,450억 500만원 대비 52억 9,600만원이 감액(3.7%)된 1,39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도로교통공단출연(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도로교통공단출연 (출연금)	134,934	145,005	139,709	△5,296	△3.7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5년도 지출예산안은 4,326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 2,800만원(5.2%)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 수입예산안은 2,929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7억 2,400만원(10.0%)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수 입	411,200	432,628	21,428	5.2
도로교통공단출연(출연금)	145,005	139,709	△5,296	△3.7
자체수입	266,195	292,919	26,724	10.0
사업수입	255,192	280,379	25,187	9.9
사업외수입	992	1,213	221	22.3
기타수입	10,011	11,327	1,316	13.1
지 출	411,200	432,628	21,428	5.2
인건비	201,478	209,095	7,617	3.8
경상경비	4,411	4,363	△48	△1.1
사업비	200,593	214,333	13,740	6.8
예비비	4,718	4,837	119	2.5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나)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확대를 위한 발급 절차 개선 필요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관리 사업 중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20. 6.)」 등의 정부 핵심과제 일환인 모바일운전면허증²⁸⁾ 발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개인정보 노출위험과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전자적 형태의 운전면허증으로 실물 운전면허증 기반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금융권 등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155개²⁹⁾의 사용처에서 사용되고 있음.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현황>

(단위: 건, '24년 8월 말 기준)

구 분	전체	모바일		일반	
		실적	발급률(%)	실적	발급률(%)
2022년	4,804,106	961,270	20.0	3,842,836	80.0
2023년	4,529,149	1,266,970	28.0	3,262,179	72.0
2024년	3,336,185	1,203,729	36.1	2,132,456	63.9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28) 「도로교통법」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29) 공공부문 27개(정부24, 국민비서 등), 민간부문 35개(편의점, 이동통신, 인증서 등), 금융부문 93개(은행 등) '24년 7월 말 기준. '22년 사업 초기 당시 11개소에서 144개소 추가 확보.

□ 그런데 신규 면허 취득자 중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목표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25%, 2024년 50.9%로 제도도입 당시 계획했던 목표달성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2023년 대비 2024년 달성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목표를 하향 수정하여 달성률이 높아졌기 때문임. 발급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전자적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으로 파악됨.

<신규 면허 취득자 중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현황>

(단위: 건, '24. 8월 말 기준)

구 분	모바일			일반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2023년	519,797	130,181	25.0	391,285	509,628	130.2
2024년	227,486	115,758	50.9	530,773	327,729	61.7
2025년	242,879	-	-	451,069	-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특히 운전면허 전문학원을 통한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의 경우 일반면허증과 비교하면 ‘핀 번호’ 등록을 위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등의 행정적 불편함이 있는데, 운전면허학원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2023년 기준 490,597건으로 전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중 76.7%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임.

<신규 면허 취득자 중 운전면허 전문학원 발급 현황>

(단위: 건, '24. 8월 말 기준)

구 분	전체	전문학원		이 외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3년	639,809	490,597	76.7	149,212	23.3
2024년	443,487	343,978	77.6	99,509	22.4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 전문학원 면허증 발급 절차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모바일운전면허 수입액³⁰⁾을 2023년 407억원에서 2024년 239억원, 2025년 329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수지차보전기관의 특성상 자체수입 감소는 공단에 대한 출연금의 증가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 감소로 이어지므로, 원활한 사업 운영에 위축을 불러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0) 공단은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일반 면허증보다 5,000원이 더 비싼 15,000원으로 모바일운전면허 수입액이 늘어날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출연금 감소와 공단의 재정 자립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임.

□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분실 위험이 낮고 위·변조 방지가 용이하며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편의성 등의 장점³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급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단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저해 요인 및 사용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급 절차 간소화 및 기한 단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모바일운전면허증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1) 공단은 이에 대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정부24, 간편인증 등 공공부문과 편의점, 은행 등 신분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여, 실물 신분증 사본의 도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금융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 될 수 있다는 의견임.

(2) 사회적약자보호활동(1431-311)

-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제도의 필요성 및 만족도에 비해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지역별 편차가 상당하므로,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지방청별 실태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 플랫폼 시스템으로 통합시 각 시스템의 고유 목적과 연계의 실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통합 이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합 플랫폼 시스템 구축의 지연으로 추가적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사회적약자보호활동 사업(1431-311)은 아동,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실종사건, 가정폭력·아동학대 및 성범죄·스토킹범죄에 대해 범죄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제작·실시하고, 해당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범죄담당 경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53억 2,200만원 대비 111억 6,900만원 증액(209.9%)된 164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회적약자보호활동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사회적약자보호활동	5,039	5,322	16,491	11,169	209.9

※ 자료: 경찰청

(나) 범죄피해평가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경찰청의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수사관이 그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와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 예산안으로 2024년 예산 4억 3,500만원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4억 8,900만이 편성되어 있음.

□ 도입 경과를 살펴보면,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101개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로 매년 운영 관서를 확대해 왔으며 2023년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 중임.

<범죄유형별 범죄피해평가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8월)
운영 관서		101	166	208	230	259	259
전체 건수		897	988	1,391	1,696	1,883	1,429
범죄 유형별 현황	성폭력	—	432	640	779	739	567
	폭력	—	332	374	372	461	338
	스토킹	—	—	—	210	245	211
	살인	—	65	86	101	100	61
	기타	—	159	291	234	338	252

※ 자료: 경찰청

□ 범죄피해평가절차는 위기개입·상담·면담·보고서 작성 등 총 5단계로 진행되며, 구속영장 청구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2023년부터 신속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경찰청에서 2023년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1,69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응답 : 1,026명), 응답자의 9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1%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평가제도 이용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고려하면, 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³²⁾

32) <제도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연 도(참여자)	‘20년(57명)	‘21년(470명)	‘22년(1,026명)	‘23년(1,460명)
만족도	92%	95%	96%	95%
다른 피해자에 권유 의향	85%	92%	91%	91%

<범죄피해평가 유형별 세부절차 및 소요기간>

절차	① 위기개입상담	② 1차 면담	③ 보고서 작성	④ 2차 면담	⑤ 보고서 제출
담당	피해자보호 담당 경찰관	전문가	전문가(감수위원)	전문가	전문가→피보→수사관
기본 (2~3주)	사건접수 3일 이내	범죄 발생일 10일 후	1차 면담 후 7일 내	보고서 작성 후 7일 내	2차 면담 후 7일 내
신속 (3~5일)	수사관 요청 즉시	요청일로부터 1일 限	요청일로부터 3일 限	요청일로부터 5일 限	2차 면담 종료 직후

※ 자료: 경찰청

□ 그런데 경찰청에서 제출한 범죄피해평가제도 관서별 실시현황 자료를 살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 개선사항이 필요해 보임.

첫째, 범죄피해평가제도 실시율이 매우 낮아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범죄피해평가대상 강력범죄 대비 피해평가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0.5%, 2022년 0.6%, 2023년 0.7%로 최근 3년간 실시비율이 1%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만족도 및 필요성에 비해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

<최근 4년간 강력범죄 대비 피해평가 건수>

(단위: 건, %)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1~8월)		
	강력 범죄*	피해 평가	비율	강력 범죄	피해 평가	비율	강력 범죄	피해 평가	비율	강력 범죄	피해 평가	비율
서울	53,534	271	0.5	52,820	295	0.6	49,175	317	0.6	30,543	284	0.9
부산	20,481	97	0.5	18,813	107	0.6	18,031	122	0.7	11,819	63	0.5
대구	13,158	84	0.6	12,326	98	0.8	12,076	105	0.9	7,620	46	0.6
인천	19,172	138	0.7	16,806	172	1	15,972	140	0.9	9,950	129	1.3
광주	7,941	43	0.5	6,879	51	0.7	7,211	71	1	4,543	34	0.7
대전	8,945	26	0.3	8,534	36	0.4	8,259	31	0.4	5,394	33	0.6
울산	5,957	23	0.4	5,503	37	0.7	5,433	29	0.5	3,374	17	0.5
세종	961	6	0.6	1,025	11	1.1	1,124	14	1.2	685	5	0.7
경기부	55,655	305	0.5	52,897	295	0.6	49,971	438	0.9	30,934	226	0.7
경기북부	17,330	59	0.3	16,268	130	0.8	15,292	132	0.9	9,994	164	1.6
강원	8,424	21	0.2	8,035	58	0.7	7,852	71	0.9	5,048	53	1
충북	8,519	35	0.4	7,960	45	0.6	6,874	64	0.9	4,226	52	1.2
충남	10,531	48	0.5	9,780	64	0.7	10,271	52	0.5	6,719	59	0.9
전북	9,115	53	0.6	7,687	69	0.9	7,977	62	0.8	5,118	41	0.8
전남	9,922	43	0.4	9,444	46	0.5	9,582	42	0.4	5,761	45	0.8
경북	13,571	63	0.5	11,792	84	0.7	11,831	88	0.7	7,257	66	0.9
경남	17,843	60	0.3	15,997	82	0.5	15,592	82	0.5	9,955	83	0.8
제주	5,738	16	0.3	5,764	16	0.3	5,542	23	0.4	3,267	29	0.9
합계	286,797	1,391	0.5	268,330	1,696	0.6	258,065	1,883	0.7	162,207	1,429	0.9

※자료: 경찰청

* 강력범죄 유형 :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현재는,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와 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범죄피해평가)에 근거해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³³⁾.

둘째, 실시 관서(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23년의 경우 대전, 전남, 제주의 경우 실시비율이 0.4%지만 세종의 경우 1.2%로 지역관서별로 크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이는 지방 경찰청별로 동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활지역에 따라 제도의 혜택을 균질하게 받지 못하는 불평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시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해보면, 경찰청은 범죄피해평가의 제도의 필요성 및 만족도에 비해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지역별 편차가 상당하므로,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지방청별 실태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3) 범죄피해평가 실시 근거

- ▶ 경찰수사규칙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행안부령>
-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범죄피해의 평가)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보호·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경찰청 훈령>

(다) 사회적약자보호 종합 플랫폼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 플랫폼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ISP 절차를 완료하였고 2025년도에는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비용으로 17억 5,200만원,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 비용으로 22억 2,500만원 등 총 39억 7,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현재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관련 6개 시스템(APO시스템, SPO시스템, 피해자전담경찰관 업무관리시스템, 117신고시스템, APO 모바일, 폴케어 앱)을 통합·흡수하여 하나의 “사회적 약자보호 종합 플랫폼”(이하 ‘종합 플랫폼’)으로 재구축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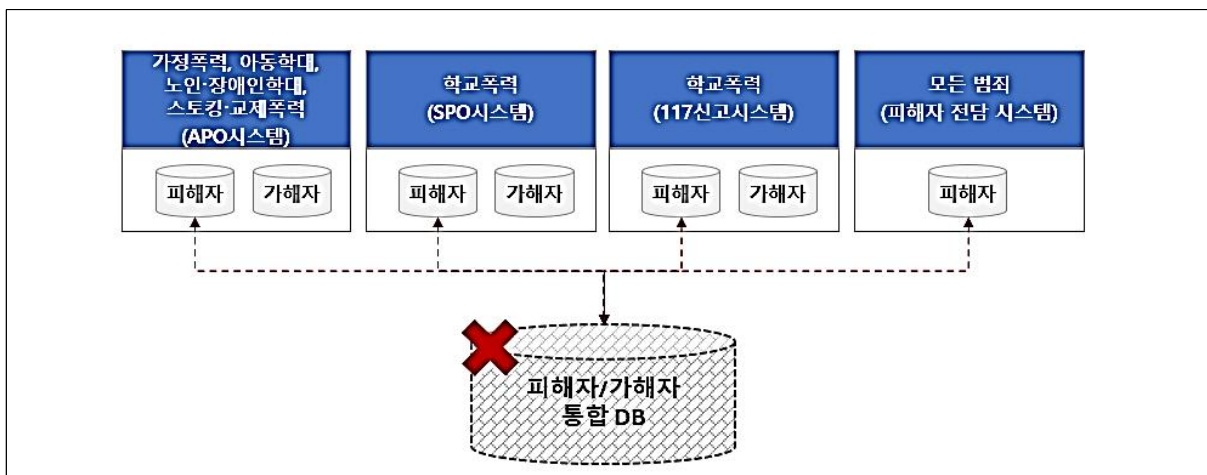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 관련 시스템 개요>

시스템명	시스템 개요
APO시스템	가정폭력·학대·스토킹·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장 출동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사건정보 및 피해자 관련 정보를 입력·관리·현출하는 시스템
APO모바일	APO모바일은 지역경찰 업무용 휴대폰으로 APO시스템 內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한 ‘모바일 앱’
SPO시스템	학교폭력 현황, 위기청소년 면담, 학교전담경찰관(SPO) 활동사항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 ※ <대내·외> 연계 없음
117 신고시스템	학교폭력 신고접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연계, 사후모니터링 및 기타 상담 실시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 ※ <대내·외> 연계 없음
피해자전담경찰관 업무관리시스템	피해자보호 및 지원 활동을 전산으로 실시간 입력·관리·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관서 운용 등에 반영,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 안전조치 대상자를 사후관리하는 시스템(△스마트워치 △CCTV △임시숙소 등 제공·관리) ※ <내부> 연계 없음 <대외>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폴케어 앱	범죄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형사절차상 권리,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심리안전 프로그램 정보 제공

※자료: 경찰청

- 최근 경찰의 역할이 신속한 범인 검거에서 사회적 약자·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로 확대되면서, 가·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사건이력 관리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피해자의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피해자·가해자 DB 현황 분석 결과>



※ 자료: 경찰청

- 동 사업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6개 시스템을 통합하여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표준화하고 가·피해자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점증하는 관련 사건 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학대예방경찰관업무관리시스템 관리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사건관리량 건수>

구분	합계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21년(건)	276,758	223,111	36,370	7,907	296	9,074 (21.10.~12.)	-
22년(건)	340,246	234,102	38,044	10,227	691	37,626	19,556 (22.10.~12.)
23년(건)	426,177	241,824	44,613	15,413	939	39,737	83,651

※ 자료: 경찰청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가·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기반한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에 비해 재발 위험성이 높고 가·피해자 모두 범죄 경험이 반복·누적되면서 범죄의 수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종합적 대응을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초동 대응, 사건관리, 피해자 보호·지원 등 핵심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 경찰청은 현재 운영중인 6개 시스템의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어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종합 플랫폼의 목표는 ① 현재 운영중인 APO 시스템 등 6개 시스템을 통합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②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교제폭력,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대상 등을 사건별·인적정보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작업의 표준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종합 시스템 목표 모델 개념도>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시스템 통합시 각 시스템의 고유 목적과 연계의 실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ISP과정에서 중복성 점검기준에 따른 정보시스템 중복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나, 서비스·데이터·수요자의 중복은 없으나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을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시스템의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음.

□ 폴케어 앱의 경우 현재 강력범죄 피해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각종 절차와 권리등을 안내하는 기능을 가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사회적 약자보호 종합 플랫폼 시스템 관련 중복성 검사 결과>

대상 시스템	중복성 검토 체크리스트		
	서비스	데이터	수요자
APO시스템(학대전담경찰관)	○	X	X
SPO시스템(학교전담경찰관)	X	X	X
117신고시스템(학교폭력신고센터)	X	X	X
피전시스템(피해자인권포털)	X	X	X
폴케어시스템(Polcare)	X	X	X

※ 자료: 경찰청

- ☐ 이와 같은 국민 대상 애플리케이션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인 APO·SPO시스템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제한적일 수 있음.
- ☐ 경찰청은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통합 이후에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둘째, 동 사업은 3년간 총 1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의 특성상 종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개별 6개 시스템은 계속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완료시까지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에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1억 6,100만원, 범죄피해자 안전진단 앱 유지보수 예산 3,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종합 시스템 구축의 지연으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수사기획조정관】

(1) 수사지원(1231-311)

- 최근 2025년 6월로 예정된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시스템의 적기 시행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불용된 스캔시스템 용역비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고속복사기 임차사업은 수사기록물 전자화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입시기 등을 고려 고속복사기 임차 대수를 조정하여 절감된 비용을 스캔 용역비로 전환하는 등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위원 명단과 심의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 외부위원을 공정하게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일부 지방청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므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청별 개최실적 등을 반영한 예산 배분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 피싱범죄 국민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이 전화를 송신할 때 공신력 있는 발신 정보를 표시해주는 ‘발신정보 알리기’ 서비스를 전국 경찰관서 수사부서에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수사지원 사업(1231-311)은 경찰법상 경찰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수사활동’과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를 위한 물적·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2,328억 1,300만원 대비 95억 6,900만원이 감액(△4.1%)된 2,232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수사지원 사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수사지원	235,672	232,813	223,244	△9,569	△4.1
·차세대KICS 스캔시스템	-	5,417	-	△5,417	△100
·고속복사기 임차	3,399	3,528	3,528	-	-

※ 자료: 경찰청

(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 및 현대화를 통해 형사절차에서 국민 편의성 및 형사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주요 기능으로 ①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 ②온라인 및 비대면 서비스확대 ③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④음성인식 활용 조서 작성 등을 지원함.
- 경찰청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1년 12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2024년 9월까지 총 33개월의 개발과정을 거쳐 2024년 9월 19일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2025년 6월에는 법무부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되어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가 시행될 예정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경찰·검찰·해경·법무부 공동으로 AI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 형사절차 전자화 확대 기반 조성 및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혁신 추진
※ (사업기간) '21. 12월 ~ '24. 12월, 3년간

■ 세부 내용

- **(사건수사시스템 재편)** 전자기록 생산·유통체계 기반 마련 및 수사 편의기능 고도화
 - ① 전자기록 생산·유통 시스템<'25. 6월 개통>
 - **(수사관)** 작성문서 출력없이 유통, 진술자에게 전자적 열람·서명 받아 조서작성 등
 - **(사건관계인)**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서류제출, 이의신청, 기록 열람·복사 신청 등
 - ② 수사 편의기능 고도화
 - **(기록뷰어)** 수사서류에 대해 △키워드 검색 △메모 △북마크 등 편의기능 구현
 - **(디지털수사자료 관리)** 동영상 등 대용량파일(파일당 1GB이하) 업로드 가능
 - **(공소시효 분석 프로그램)** 사건 관련 공소시효 자동 계산
- **(수사역량 강화 지원)** 수사 효율성 및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능형 사건추천)** 유사한 사건추천, **(음성인식조서)** 조사시 음성 실시간 텍스트화
 - **(모바일킵스)** 모바일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각종 서식작성, 킵스 정보조회
 - **(원격화상조사)** 전자조서('25. 6월 시행), 자료 제시·제출 등 가능
- **(연습시스템 고도화)** 사건 시나리오를 통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및 음성인식조서지원시스템 등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는 2024년 65억 6,500만원 대비 50억 9,900만원 감액된 1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4~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565	◦ 차세대KICS 스캔시스템: 5,417백만원 · 스캔용역비 : 6,862,572장×198원=1,359백만원 · 스캐너 : 5,348대×730천원=3,904백만원 · PC 등 : 159대×972천원=155백만원 ◦ 차세대KICS 음성인식조서지원시스템: 1,148백만원 · 일체형 마이크 : 726천원×1,581대=1,148백만원	1,466	◦ 차세대KICS 원격화상조사시스템: 318백만원 · 웹캠, usb 스피커폰 : 318천원×1,003대=318백만원 ◦ 차세대KICS 음성인식조서지원시스템: 1,148백만원 · 일체형 마이크 : 726천원×1,581대=1,148백만원

※ 자료: 경찰청

□ 그런데, 최근 개통된 동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2025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라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면밀히 검토해 시스템의 조기 안착 및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2024년 차세대KICS 장비보급 사업의 예산 중 스캔시스템 사업은 「형사절자전자문서법」 제정('21.10.)에 따라 사건기록물 등을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위한 스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 스캔 용역비 및 스캔 장비 보급을 위해 5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 9월 현재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스캔 장비 보급 예산은 집행되었으나 스캔용역비 예산 13억 6,000만원 전액 불용이 예상됨.

□ 경찰청은 이에 대해 법무부 수사기록물 전자화 시점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동 시스템의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 후 사업 예산을 집행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2025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미반영된 점을 보았을 때, 2025년 6월로 예정된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건기록물을 적기에 전자화하기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면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형사사법기관은 연간 약 180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별 적게는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만 장의 종이가 필요하고, 해당 사건 기록물을 인편으로 이관, 종이 기록 관리, 보관·폐기에 따른 운영 비용 등 비효율을 고려할 때, 법원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전자문서 유통구조 구축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경찰청은 스캔 용역비 예산을 향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관련 사업이 적기에 차질없이 수행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2024년 개통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개통 첫날부터 사용자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속 지연 및 일부 사이트 오류 메시지 등이 나타나는 등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대량의 디지털 문서 저장·유통 기술이 요구되는 법원 시스템과 KICS 간의 연계 시 접속 지연 등 장애로 안정적인 수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³⁴⁾

경찰청은 2025년 6월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시스템 안정화와 사용자 지원에 주력하여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행 KICS 통계관리의 한계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함.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가 급증³⁵⁾함에 따라 기존 사이버수사부서 외에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도 일부 수사를 분담하게 되었으나, KICS 기반 사이버수사 통계는 사이버수사부서의 수사 현황만 관리³⁶⁾되어 여성·청소년 수사부서 등 타 부서의 수사실적이 KICS 시스템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정확한 통계 확보를 위해 양 부서의 접수 건수를 수기로 취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발생건수	156	160	180	812 (1. 1.~9. 25.)

※ 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처벌규정은 '20. 6. 25.부터 시행되어 '21년부터 통계관리 중
※ 자료: 경찰청

34) 중앙일보, “검찰·경찰 첫날부터 접수 안됐다…1518억 ‘차세대 키스’ 무슨 일”(2024.09.19.).

35) 경찰청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24. 8. 28.~'25. 3. 31.)」을 실시

36) 경찰의 딥페이크 성범죄 소관 부서는 사이버수사부서임.

다만, 이러한 수기 취합 방식은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저하 우려, 연도별 통계 수집 방식의 차이로 인한 범죄 추세 분석의 단순 비교 불가, 신속한 범죄 동향 파악 및 대응의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동 사례를 참고하여 차세대 KICS를 운영하면서 수사부서 간 정보공유 및 통계 자동 집계가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담당 수사부서에 구애됨 없이 정확한 통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사건기록등본용 고속복사기 임차사업 예산조정 검토 필요

- 고속복사기 임차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병존사건(송치·불송치 등 결정이 혼재된 사건)에 대한 기록 등본의 무가 신설되어, 원활한 등본업무 수행을 위한 고속복사기 임차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35억 2,800만원(전년 동)이 편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28	○ 기타 현장수사 지원장비 보급 : 4,309백만원 · 사건기록등본용 고속복사기 588대×6백만원 =3,528백만원	3,528	○ 기타 현장수사 지원장비 보급 : 4,309백만원 · 사건기록등본용 고속복사기 588대×6백만원 =3,528백만원

※자료: 경찰청

- 현재 경찰청은 병존사건 기록물을 등사하여 원본은 검찰로 송부하고 등본만 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수사부서에 고속복사기를 임차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2025년 6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시 검찰로 종이기록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단순히 송부를 위한 원본기록물 사본 생성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경찰수사규칙 제110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송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병존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분리하여 송치 및 송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56조(사건기록의 등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분리하여 송부하거나 반환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서류와 증거물의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등사하여 송부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25년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더라도, 법 시행 이전에 수사 개시한 사건의 기록물은 스캔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종이기록물을 검찰에 송부해야하고, 민원인이 제출한 수사 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사 요청에 따른 등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여 고속복사기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하지만 향후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라는 시스템 개편 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청은 종이문서 생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임. 특히, 2025년 6월로 예정된 완전 전자화 추진 일정에 맞춰, 종이기록물 등본 수요를 줄이고 전자화(스캔)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업무수행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청은 고속복사기 임차 대수를 조정하여 절감된 비용을 스캔 용역비로 전환하는 등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검토 필요

□ 경찰은 2010년부터 경찰수사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 심사를 반영하기 위해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도입·운영하였고, 2021년 4월부터는 외부의 객관적 심사를 확대하고자 사회 각 분야의 시민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구성) ② 위원장 및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수사 전문가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 사회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0조(설치·구성) ① 경찰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심의하여 수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0인 이상 40인 이내의 외부위원과 6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시·도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2조(운영) 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은 매 회의 때마다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때 외부위원의 수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위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은 매 회의 때마다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소집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회의중³⁷⁾ ‘채상병 순직 관련’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심의할 때, 공정하게 외부위원을 구성하였는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및 위원 구성을 모두 비공개하면서 회의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위원 구성방식에 있어 현행과 같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운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정치적·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재발할 소지가 있음.

□ 경찰청은 회의 개최 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분야별 위원들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순번에 의해서 소집 요청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불참 사유는 개인 일정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위원회 최종 구성이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에 달려있고, 불참에 따른 대체 위원을 전문분야별 위원 분포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다음 순번으로 결정 시 위원 구성의 분야별 편향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객관성·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³⁸⁾

37) 제414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소속기관 업무보고, 2024.7.11.)

38) 경찰청은 행안위 의견을 수용,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①사건관계인 출석 기회 부여 ②외부위원 인력풀·참여인원 확대 ③외부위원의 균등한 참여기회 부여 등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따라서 경찰청은 위원회 구성과 회의결과를 비공개로 하여 운영하고 있고 최종 위원회 구성이 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인력풀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구성비율, 위원들의 참석빈도, 분야별 구성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정 위원들의 참석빈도가 높다면 의사결정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① 사건관계인 출석 기회 부여 ② 분야별 외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불출석 시 분야별 전문가 풀에서 위원 구성 ③ 불참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사전 의견 제출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마)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개최 활성화 방안 검토

- 경찰청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2025년도 예산안은 외부위원(8인) 자문료를 1인당 20만원으로 산정하여 7억 2,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전년동).³⁹⁾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28	○ 기타 수사활동 지원 11,502백만원 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730백만원) · 경찰수사심의위원회 8명×20만원×12월×2회 ×19개청=730백만원	3,528	○ 기타 수사활동 지원 : 10,786백만원 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730백만원) · 경찰수사심의위원회 8명×20만원×12월×2회 ×19개청=730백만원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매년 예산안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비 편성 시 본청 및 시·도경찰청별(총 19개청)로 월 2회를 산정하여 편성하였는데, 최근 4년간 경찰청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56회, 2022년 218회, 2023년 237회로 매년 개최횟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경찰청이 계획한 개최실적 465회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39) 경찰청은 이에 대해 예산은 8명 기준으로 산출했으나 규정(10~15명)에 따라 통상 10명 이상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최근 4년간 본청 및 시·도경찰청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개최횟수>

연도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남	경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83	29	50	47	44	43	43	34	26	45	66	51	40	45	40	32	32	41	42	33
'21년	156	9	13(1)	15(2)	12	10(1)	7	5	2	4	13(1)	13(2)	6	9	8	2	5	8	9	6
'22년	218	11(1)	12	12	12	13	14	10	4	12	19	13(3)	11	10(1)	12	10	9	12(2)	12	10
'23년	237	5	12	12	12	12	13	11	11	14	23	15(3)	12	16(3)	12	12	10	13(1)	12	10
'24년 8월	172	4	13	8	8	8	9	8	9(1)	15	11(2)	10(2)	11	10(2)	8	8	8	8(1)	9(1)	7

※자료: 경찰청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본청은 분기 1회)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⁴⁰⁾, 실제 개최현황을 보면 정기회의 개최횟수인 월 1회를 충족하지 못하는 규모가 작은 시·도경찰청이 일부 있음.

시·도경찰청별로 살펴보면, 평균 월 2회를 충족하는 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2022년 19회에 이어 2023년 23회를 개최하였으나, 본청, 대전경찰청, 전남경찰청, 제주경찰청 등은 평균 월 1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회의의 경우에도 본청 포함 19개 경찰청 중 경기북부, 충북, 경북경찰청 등 3개 관서만 개최실적이 있음을 볼 때, 시·도경찰청별로 개최수요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됨.

40)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운영)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본청>

제22조(운영) 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개최한다. <시·도경찰청>

□ 다만, 개최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개최실적에만 주안점을 두게 되면 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운영비용 상승과 회의 준비로 인한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청을 포함한 시·도경찰청별 개최실적과 수요를 반영한 예산 배분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바) 피싱범죄 국민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관서 수사부서 발신 정보
알리미 서비스 도입 필요

- 최근 관공서 사칭 등 피싱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관의 전화조차 수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들의 번호가 차단되어, 결국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까지 발송해야 하는 등 현장 경찰관들의 수사업무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⁴¹⁾
-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4,472억대이고, 특히 ‘기관사칭형’ 피해규모는 매년 증가추세(’24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75.1% 증가)로,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전화를 송신할 때 공신력 있는 발신 정보를 표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발신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제3자 정보를 올바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가 필요함.

<최근 4년간 보이스피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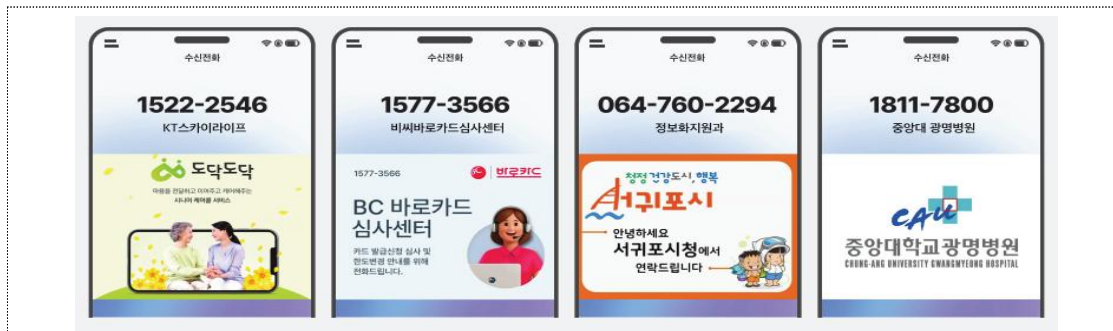
구 분	합 계			기관사칭형		
	피해 (억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피해 (억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21년	7,744	27,647	26,397	1,741	1,954	1,895
’22년	5,438	24,522	25,030	2,077	4,103	4,500
’23년	4,472	20,991	22,386	2,364	7,352	8,039
’23년(~ 8월)	2,759	12,516	13,094	1,444	4,220	4,467
’24년(~ 8월)	4,625	13,725	14,063	2,528	4,425	4,652
전년 대비 증가율	67.6%	9.7%	7.4%	75.1%	4.9%	4.1%

※자료: 경찰청

41) “보이스피싱 아닙니다”...경찰 사칭 때문에 애먹는 ‘진짜 경찰’-제 발로 경찰 찾은 고소인조차도 피싱으로 오해해 경찰 연락 차단 “블랙박스 등 증거 수집도 어려워”(2023.7.12.), 조선비즈.

-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목적으로 ‘보이는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도입하여, 집배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 경우 발신자 정보가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⁴²⁾하고 있는데,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고객들의 불안을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발신정보 알리미 도입 사례>



※자료: 경찰청

- ‘KT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는 번호변작 등 도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특허기술을 도입⁴³⁾하여, 이미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현재 수사관이 피의자들을 특정하여 처음 전화를 거는 경우 민원인이 ‘진짜 경찰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182 민원전화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등 수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절차 지연의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전국 경찰관서 수사부서에 ‘발신정보 알리미’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음.

42) 우체국, ‘보이는 발신자표시’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예방한다(2024.09.11.), 오마이뉴스

43) KT에서 관리하는 특정 회선이 아니면, 경찰관이 아닌 제3자가 동일한 발신번호를 중계기 등을 통해 번작하더라도, KT에서 인증한 텍스트 및 이미지가 상대방 수신 화면에 현출되지 않음(신뢰된 발신자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 등록특허 10-2171294)

【형사국】

(1)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1231-313)

- 경찰청은 수사용 임차차량의 임차료 및 유류비를 개별 사업에서 편성하고 있으나, 유류비의 경우 단가등 편성 기준의 일관성 확보와 예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차량관리 사업을 통해 통합 편성·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 사업은 ① 형사활동 지원, ②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여청수사팀 역량 강화, ③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④ 마약조직·피싱범죄 수사활동 지원, ⑤ 교통사고 관련 조사 및 수사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241억 2,000만원 대비 44억 6,000만원 감액(△18.5%)된 19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사업 예산 개요>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24,240	24,120	19,660	△4,460	△18.5

※자료: 경찰청

(나) 임차 차량용 유류비 통합 편성 필요

- ☐ 경찰청은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비노출차량 임차 예산으로 총 31억 8,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스토킹 범죄 수사용 차량 임차에 18억 8,400만원, 마약 수사를 위한 비노출 차량 임차에 10억 400만원, 피싱 범죄 조직원 검거를 위한 비노출 차량 임차에 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2025년도 수사용 임차 차량 예산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임차료	유류비	계
스토킹 범죄 수사용 차량 임차	1,520 (138대×918천원×12개월)	364 (138대×7,218원×365일)	1,884
마약 수사용 비노출 차량 임차	855 (71팀×180천원×6일×12개월)	84 (71팀×16,431원×6일×12개월)	1,004
피싱 범죄 수사용 비노출 차량 임차	270 (48팀×161,600원×2.9일×12개월)	30 (48팀×17,959원×2.9일×12개월)	300

※ 자료: 경찰청

- ☐ 경찰청은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범죄 수사용 차량을 상시적으로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차량 임차료 예산으로 15억 2,000만원, 유류비로 3억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 ☐ 마약범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고가의 외제차 등의 단기 임차 예산으로, 2024년도에는 임차료 예산으로 8억 5,500만원, 유류비로 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피싱범죄 수사용 비노출 차량 임차 비용 피싱조직에 노출되지 않고 잠복수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단기 차량 임차료로 2억 7,000만원, 유류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스토킹 범죄 수사용 차량 / 마약·피싱 수사용 비노출 차량 임차 비교>

	스토킹범죄 수사용 차량 임차	마약·피싱 범죄 수사 비노출 차량 임차
목적	스토킹 범죄 관련 출동, 긴급응급조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 전반에 필요	피의자 추적, 잠복 근무 등 은밀성이 필요한 비노출 수사 업무에 필요
필요 차종	카니발, 스타렉스 등 승합차 필요	승합차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승용차, 외제차 등 다양한 차종 필요
운영 방식	계약 기간 동안 상시 운영	필요 시에 한해 비상시·단기로 운영

※자료: 경찰청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유류비 (210-08)의 경우 그 적용범위를 보일러 등 난방시설, 원동기 등 동력장치, 차량·항공기·선박의 운행 등에 필요한 모든 유류 구입비로 하면서 유류를 구매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⁴⁾. 이는 업무상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에 대해 사전에 계약된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필요한 유류를 결제하도록 하여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4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p155.

□ 경찰청은 이와 관련하여 업무용 차량 유류비에 대해 차량관리 (4231-312) 사업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2025 년도에는 총 679억 900만원의 예산을 차량용 유류비로 편성하였 는데, 그 중 휘발유는 371억 4,400만원, 경유는 307억 6,500만원임.

<차량관리 사업 예산 개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차량관리	94,446	115,111	106,030	△9,081	△7.9
공공요금및제세	13,240	16,927	15,266	△1,661	△9.8
유류비	58,836	75,578	67,909	△7,669	△10.1
차량유지관리	22,590	22,606	22,853	247	1.1

※자료: 경찰청

<2025년도 경찰청 유류비 예산 편성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휘발유	경유	계
유류비	37,144 (20.8백만리터 × 1,786.2원)	30,765 (18.5백만리터 × 1,663.4원)	67,909

※자료: 경찰청

□ 그런데 2023년도 스토킹 범죄 수사용 차량 임차 사업의 유류비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은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 행된 유류비는 6,000만원에 불과하여 1억 1,900만원의 예산이 불 용되었음.

<2023년도 임차 차량 유류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스토킹 범죄 수사용 임차 차량 유류비	179	60	119
마약수사용 비노출 차량 유류비	37	36	1

※ 자료: 경찰청

- ☐ 경찰청이 임차 차량의 유류비 수요를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유류비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 수사용 차량과 같이 상시적·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임차 차량에 대한 유류비도 전체 차량관리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유류비 집행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 그러므로 경찰청은 향후 임차 차량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스토킹 범죄 수사용 차량과 같이 상시적·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임차 차량에 대한 유류비는 차량관리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함으로써 유류비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감사관】

(1) 감사·감찰·인권활동(7133-311)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신규) 관련 모든 관서(278개)에 동일한 개최 횟수와 인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경찰청은 관서별 인구, 민원의 유형과 규모 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감사감찰인권활동(7133-311) 사업은 경찰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업무, 징계 운영, 민원 업무의 운영과 지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소속 공무원의 비위 조사와 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2024년 예산 24억 2,700만원 대비 3억 2,500만원이 증액(13.4%)된 27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감사감찰인권활동 사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감사감찰인권활동	3,047	2,427	2,752	325	13.4%

※자료: 경찰청

(나) 민원조정위원회의 관서별 민원 특성·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필요

□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약칭 ‘민원처리법)」 및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해 반복민원(다수인관련 및 종결처리된 후 재접수
된 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행정기관
의 장은 상기 기술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할 의무가 있음.⁴⁵⁾

□ 경찰청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용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민원조정위원회 예산안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안
민원조정위원회	0	125 (278개 관서×외부위원 3명×15만원)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중앙부처 민원 중 약 57%('23년 국민신문고 기준)를 처리하
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는 반복민원 등
악성 민원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종결수단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사
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⁴⁶⁾하
기 위해 제도도입 및 운영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45) 관련 근거

- (민원처리법 제34조)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민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8조의2)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인관련민원 및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한다.

46) 행정안전부는 2024년 3월 김포시 공무원 사망을 계기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5.2.)

□ 경찰청이 제출한 타 기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행정기관은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단일 또는 소규모의 행정기관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 타 기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 >

· 검찰청: 年 1회 개최	· 외교부: 年 1회 개최	· 전라북도: 年 2회 개최
· 기획재정부: 年 1회 개최	· 중기부: 年 1회 개최	· 세종시: 年 1회 개최
· 고용노동부: 年 1회 개최	· 문체부: 年 2회 개최	· 대구시: 年 1회 개최
· 병무청: 年 1회 개최	· 통계청: 年 2회 개최	· 인천시: 年 2회 개최
· 방위사업청: 年 4회 개최	· 식약처: 年 3회 개최	· 강남구: 年 14회 개최
· 교육부: 年 2회 개최	· 해경청: 年 3회 개최	· 구로구: 年 2회 개최
		· 송파구: 年 2회 개최

※ 자료: 경찰청

□ 그런데 경찰청의 동 사업의 예산편성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278개 관서별로 동일하게 연 1회 개최(외부위원 3인)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과 회의 운영 등의 내부 지침은 마련되어 있으나, 회의 수당, 이해관계인의 제척·기피 사항 등을 추가 규정한 세부 운영규정 또는 지침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시 지역별·경찰서별 자의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내·외부 위원의 비율, 분야별 전문가 구성비율, 제척·기피 사유 등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 규정 등 민원조정위원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찰청은 내년부터 전국 278개 지역 관서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일괄 설치·운영할 계획인데 지역·관서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 1회 개최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특정 관서의 민원조정위원회는 실질적인 민원 해결보다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형식적인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를 불러올 뿐 실효성 있는 민원처리가 곤란할 수 있으며, 민원이 복잡하고 많은 관서에서는 연 1회 개최만으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시도경찰청 산하 경찰서는 치안 및 민원수요에 따라 급지가 등급별로 구분(1급지: 150개, 2급지 39개, 3급지: 70개) 되어있는데, 경찰서별 일괄적인 예산편성보다 민원수요와 악성 민원 발생빈도 등에 따라 차등 운영하는 것이 예산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각 관서의 민원 발생빈도와 특성에 따라 운영주기를 차등화하거나, 인접한 여러 관서를 그룹화하여 권역별로 통합 운영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방식을 검토해 관서별 개최횟수를 조정하거나 전문분야별 참여 위원 수를 늘리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처리의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음.

- 종합하면, 경찰청은 신규사업인 민원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경찰관서에 공통으로 적용할 세부 운영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별·권역별 민원량, 민원수요, 유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회의 횟수를 조정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

(1) 중앙학교인건비(7102-116)

- 경찰청은 중앙경찰학교가 수행하는 교육과정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찰관 교직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업무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정원을 수요에 맞게 조정하여 신규채용된 경찰관을 전문 직업경찰관으로 육성하는 전문교육 등이 안정적·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중앙학교인건비 사업은 중앙학교 교직원 보수와 신입교육생 수당, 연가보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587억 7,500만원 대비 41억 7,900만원 증액(7.2%)된 62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중앙학교인건비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중앙학교인건비	53,365	58,175	62,354	4,179	7.2
보수	14,955	15,632	15,694	62	0.4%
기타직보수	38,320	42,416	46,529	4,113	9.7%
연가보상비	89	127	131	4	3.1%

※자료: 경찰청

(나) 중앙학교 교수요원 정원 확보 방안 등 검토 필요

- ☐ 중앙학교는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신규 채용된 경찰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전담하는 경찰교육기관으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직원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음.

<최근 3년간 중앙경찰학교의 경찰관 교직원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명, 정원/현원)

연도	총계	경찰관								일반
		소계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이하	
2022년	181 / 231	158 / 212	1 / 1	0 / 0	2 / 5	2 / 5	40 / 28	62 / 107	51 / 66	23 / 19
2023년	182 / 226	159 / 208	1 / 0	1 / 1	3 / 5	1 / 4	40 / 39	62 / 93	51 / 66	23 / 18
2024년	196 / 229	172 / 210	1 / 0	1 / 1	2 / 5	2 / 3	47 / 39	68 / 86	51 / 76	24 / 19

※자료: 경찰청

- ☐ 최근 3년간 중앙경찰학교 교직원 정원 및 현원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원이 총 정원보다 30명 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총경 이하 계급 중 경감을 제외한 모든 계급에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음.
- ☐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인력 증원으로 교육생이 대폭 증가하여 교수요원의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최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확대되면서 경험이 풍부한 내부 교수요원을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또한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 현실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합리적 인력조정을 위한 내부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임.

- 그러나 경찰청이 연례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행정사무의 능률적인 수행과 인건비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경찰청은 중앙경찰학교 교육과정 변화와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업무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정원을 수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신규채용된 경찰관을 현장 대응력 등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